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貿易學碩士 學位論文

세계 섬유무역 자유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de Liberalization of Textile & Clothing
Industry in the World

指導教授 俞日善



2013年 8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 易 學 科

俞 炳 喆

本 論文을 兪炳喆의 貿易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崔宗洙 (印)

委員 羅昊洙 (印)

委員 兪日善 (印)



2013年 8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연구의 구성	3
제2장 전후 세계 무역자유화	5
제1절 GATT체제의 성립	5
1. 설립배경	5
2. GATT의 목적과 역할	6
3. GATT 주요 규범	7
3.1 GATT의 기본원칙	8
제2절 GATT체제의 국제무역협상	10
1. 제6차 국제무역협상 : 케네디라운드	10
1.1 케네디 라운드의 성과	10
1.2 케네디 라운드의 의의	11
2. 제7차 국제무역협상 : 도쿄라운드	12
2.1 도쿄라운드 배경	12
2.2 협상의 진행과 성과	13
3. 제8차 국제무역협상 : 우루과이라운드	14
3.1 협상배경	14
3.2 협상 진행과 성과	15
3.3 우루과이라운드 의의	16

제3장 섬유무역 보호주의 대두	17
제1절 섬유산업 보호주의 태동	17
제2절 신보호주의와 다자간 섬유협정(MFA)	19
1. 신보호주의 대두	19
2. 다자간 섬유협정(MFA)경과와 내용	20
2.1 MFA 제1기(1974~1977)	21
2.2 MFA 제2기(1978~1981)	22
2.3 MFA 제3기(1982~1986.7)	23
2.4 MFA 제4기(1986.8~1991.7)	24
2.5 MFA의 내용	24
3. MFA의 제도와 운용 평가	27
3.1 MFA 존재의 평가	27
3.2 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30
3.3 GATT체제와 상충성	35
제3절 MFA의 경제적 영향	37
1. 수출개도국에의 영향	37
2. 수입선진국에 대한 영향	40
3. 세계무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	44
제4절 MFA 한국 섬유산업에 미친 영향	54
1. 수출입 패턴 영향	54
제4장 WTO협정과 섬유무역자유화	61
제1절 WTO 섬유협정의 주요 내용	61
1. WTO 섬유협정의 개관	61
2. WTO 섬유협정 내용	64

2.1. 섬유무역의 GATT복귀 방법	64
2.2. 잠정 세이프가드 도입	66
2.3. 섬유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dy;TMB) 설치	67
2.4. 약소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조치	68
2.5 원산지 규정문제	69
제2절 WTO섬유협정이후 세계 섬유무역	69
제5장 한-미 FTA와 섬유무역	73
제1절 한미 섬유산업 비교	73
1. 한국 섬유산업의 현황	73
2. 미국 섬유 산업의 현황	76
제2절 한미 FTA 협정 체결 과정	80
1. 한미 FTA 추진배경	80
2. 한미 FTA 내용: 섬유분야	82
2.1 섬유 및 의류 분야	82
제3절 한-미 FTA와 섬유산업 변화	92
1.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동향	92
1.1 섬유원료 대미 수출동향	92
1.2 섬유재료 대미 수출동향	93
1.3 의류 대미 수출동향	94
2.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품목 동향	95
제6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3

〈표 목 차〉

〈표 3-1〉 섬유류 무역체제의 변천과정	25
〈표 3-2〉 MFA의 주요 내용비교	26
〈표 3-3〉 MFA에 의한 쌍무협정국의 수	28
〈표 3-4〉 GATT 제19조와 MFA에 의한 세이프가드 비교	28
〈표 3-5〉 개도국섬유류에 대한 영국의 수입규제효과(1990년기준)	43
〈표 3-6〉 세계전체섬유류무역 중 그룹별 비중	45
〈표 3-7〉 섬유류무역 중 그룹간 무역비중	45
〈표 3-8〉 개도국의 대선진국 섬유수출추이	46
〈표 3-9〉 개도국의 섬유류수출에 대한 규제와 쿼터 소진율	47
〈표 3-10〉 실효쿼터품목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변화(1981~87년)	49
〈표 3-11〉 개도국 및 NICs의 선진국 시장점유율의 증가율 추이(1975~87)	50
〈표 3-12〉 섬유류교역의 선진국간 교역의 비중	51
〈표 3-13〉 MFA의 경제적 영향	53
〈표 3-14〉 MFA 1·2기 섬유·의류 국내 생산 동향	54
〈표 3-15〉 MFA 1·2기 섬유 수출입 동향	55
〈표 3-16〉 MFA 1·2기 의류 수출입 동향	55
〈표 3-17〉 MFA 1·2기 국가별 한국산 섬유 對선진국 수출 동향	56
〈표 3-18〉 MFA 1·2기 국가별 한국산 의류 對선진국 수출 동향	57
〈표 3-19〉 MFA 3기 섬유·의류 수출입 동향	58
〈표 3-20〉 MFA 3기 국가별 한국산 섬유 對선진국 수출 동향	58
〈표 3-21〉 MFA 4기 국가별 한국산 섬유 對선진국 수출 동향	60
〈표 3-22〉 MFA 기별 우리나라 섬유수출 증가 현황	60
〈표 4-1〉 섬유에 대한 GATT통합률	63

<표 4-2> 쿼터자유화 과정	63
<표 4-3> 일반세이프가드와 잠정세이프가드 비교	67
<표 4-4> 세계 섬유류 수출실적	70
<표 4-5> 세계 섬유류 수입실적	71
<표 5-1> 한국 섬유 산업 현황 추이	74
<표 5-2> 우리나라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동향	75
<표 5-3> 우리나라의 섬유군 수출입 추이	76
<표 5-4> 미국 내 섬유 산업 현황 추이	77
<표 5-5> 미국 내 섬유제품 출하동향	78
<표 5-6> 미국의 섬유군 수출입 추이	79
<표 5-7>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현황	83
<표 5-8> 제11부 방직용 섬유 및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84
<표 5-9> 우리나라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내역	87
<표 5-10> 섬유·의류 제조공정별 원산지인정 방식	88
<표 5-11> 제11부에 대한 3가지 규칙	90
<표 5-12> 섬유원료 대미 수출동향	93
<표 5-13> 섬유재료 대미 수출동향	94
<표 5-14> 의류 대미 수출동향	95
<표 5-15> 섬유원료 수출 증가 품목 현황(HS4 단위 기준)	98
<표 5-16> 섬유재료 수출 증가 품목 현황(HS4 단위 기준)	99
<표 5-17> 의류 수출 증가 품목 현황(HS4 단위 기준)	100

<그림 목 차>

<그림 3-1> VER의 경제적 효과 41



ABSTRACT

A Study on the Trade Liberalization of Textile & Clothing Industry in the World

by O, O O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has proven a powerful means for countries to promote economic growth,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Over the past 20 years, the growth of world trade has averaged 6 percent per year, twice as fast as world output. Since 1947, when the GATT was created, the world trade system has benefited from eight rounds of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as well as from unilateral and regional liberalization. Indeed, the last of these eight round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WTO to help administer the growing body of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Even though the world trade proceeded toward the liberalization, the trade of the textile and apparel(T&A) got protected by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 EU. T&A industries have a long history of protectionism, including the MFA that governed world trade in these products from 1974 to 2004. Protectionist measures in T&A include:

tariff barriers, and government subsidies and support packages.

The MFA governed the world trade in textile and apparels from 1974 through 2004 for 30 years, imposing quotas on the amount developing countries could export to developed countries. It expired on 1.Jan.2005. The arrangement was introduced in 1974 as a short-term measure to allow developed countries to adjust to imports from the developing world. Developing countries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textile production because it is labor intensive and they have low labor costs.

At the Uruguay Round, it was decided to bring the textile trad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WTO.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provided for the gradual dismantling of the quotas that existed under the MFA. This process was completed on 1. Jan.2005. However, large tariff remain in place on many textile products by using the certificate of the origin.

Under such a circumstances, the T&A industries in Korea face the hardship because they lose price competitiveness, competing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y lose quality competitiveness, competing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Now the T&A industries in Korea seek to revitalize the lost competitiveness through FTA between Korea and U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자유무역주의로 전환되었다. 1947년 정부간 협정형태로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은 무차별원칙에 의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다자간무역협정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GATT체제는 다자간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산품의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을 낮추고 개도국을 참여시킴으로써 세계무역 확대와 무역자유화 촉진에 기여하여 왔다.

1950년대 이후 세계무역질서는 GATT의 기본정신에 따라 무역자유화가 보편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섬유무역¹⁾은 이러한 GATT체제의 예외지역으로서 오히려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섬유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노동집약적이고 섬유원료, 섬유사와 섬유직물 등 섬유소재산업과 의류산업이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지역적 집중이 강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섬유산업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공업화초기 유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적합한 산업인 반면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한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협이 상존하여 무역마찰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적 특성 때문에 섬유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일찍부터 실시되어져 왔다. 1960년대 초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단기면직물협정(Short-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 STA)과 장기면직물협정(Long-Term Arrangement Regarding

1) 섬유무역은 섬유산업관련 제품에 관한 무역을 일컫는다. 섬유산업(textile and clothing industries)은 크게 섬유소재와 의류산업으로 구분된다. 섬유소재산업은 다시 섬유원료, 섬유사 및 섬유직물로 분류된다. 여기서 섬유산업은 섬유원료에서 완제품인 의류가 생산되기까지의 관련산업을 포함한다. 김미아 (2009) p144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 LTA)에 의해 섬유무역이 규제되기 시작한 이후 1974년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이 실시되었다. 이 협정은 그 후 20여년 동안 몇 차례 수정과 연장을 거쳐 세계섬유무역의 기본적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협정은 원칙적으로 섬유무역의 확대 및 점진적 자유화, 개도국 수출의 질서있고 공평한 증진, 세계섬유시장의 교란방지, 선진국의 산업구조조정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섬유무역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할 때 섬유무역에 대한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규제강도 역시 더욱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개도국의 대선진국 섬유수출을 제한하였다.

1980년대 이후 개도국들은 GATT원칙 복귀를 주장하며 섬유무역 자유화 추진과 MFA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1986년 섬유무역은 제 8차 국제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의 15개 의제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이후 섬유무역 자유화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논의되었으며 이 협상결과 2005년 MFA는 다자간 무역협상 틀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대립으로 협상타결에 실패함으로써 세계무역에서 다자주의가 무력해졌다. 이에 따라 각국들은 쌍무주의로 우회하여 FTA를 통해서 무역에 대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한미FTA, 한EU FTA가 체결됨으로써 섬유무역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섬유산업은 이와 같이 다른 산업과 달리 무역 자유화의 예외지역에 존재하여 그 자유화 과정이 훨씬 뒤처지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섬유무역의 자유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MFA의 역사적 변천의 배경과 내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평가하는 동시에 이것이 그 동안 섬유수출 개도국·수입선진국·세계섬유무역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05년 다자간 무역협상 틀에서 MFA가 사실상 폐지되고 2011년 7월 한·EU FTA, 2012년 3월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섬유산업이 수출 수혜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섬유산업의 환경변화에서 지금까지 다른 상품과 달리 왜 섬유산업의 무역자유화가 지체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섬유무역 자유화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연구 범위는 국제경제질서를 자유무역기조로 정착시키기 시작한 세계2차 대전 이후부터 한·미 FTA까지 이고, 상품은 섬유산업과 관련된 것을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기술한다.

한미 FTA가 발효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여 한미 FTA 협정문, 관세청 내부 자료, UN 및 한국무역협회 섬유·의류 수출 통계, 섬유산업연합회 발간 자료, 섬유 및 의류 산업 관련 협회 간행물, 학술지, 단행본 및 인터넷 자료 수집 등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섬유무역의 자유화과정을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제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논문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 구성을 안내한다.

제2장은 세계2차 대전 이후 GATT체제하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원칙과 국제무역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이런 자유무역흐름 속에서 섬유무역이 어떤 논리적 배경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를 살펴 볼 것이다.

제3장은 1970년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신보호주의가 대두하면서 섬유무역은 더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기술한다. 세계섬유산

업의 현황을 고찰하면서 1970년대 한국 섬유산업의 성장기에 섬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섬유협정(MFN)의 역사적 배경·체결과정·협정 내용을 연구하여 세계 섬유 무역 환경을 살펴보고 한국 섬유 수출산업에 끼친 영향을 살펴 보았다.

제4장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섬유무역의 GATT의 기본원칙으로 회귀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섬유무역이 자유화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쟁점과 합의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섬유무역자유화가 한국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제5장은 한·미 FTA에서 다루어진 섬유산업의 쟁점에 대해서 기술한다. 한국과 미국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을 종사자수·출하·매출 및 국제무역 통계를 중심으로 산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 배경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섬유 및 의류부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한미 FTA에 만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부문의 원산지증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대비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 앞 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본 연구 수행에서 경험한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2장 전후 세계 무역자유화

제1절 GATT체제의 성립

1. 설립배경

20세기 초 세계열강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타국의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전 세계를 무역전쟁으로 내 몰았고 국제경제 질서가 붕괴되면서 1929년 세계 대공황의 발생 원인을 제공하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각국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관세인상 및 수입쿼타 제한 등 무역장벽을 통해서 일련의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각국의 경쟁적인 보호무역정책 실시는 결국 세계2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전쟁 과정에서 전후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국제경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무역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대서양헌장²⁾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연합국이 중심이 되어 자유무역기조를 정착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44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협정³⁾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1945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⁴⁾과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⁵⁾이 발족됨으로써 금융 면에서 국제경제협력이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2) 1941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대서양 군함에 회담을 갖고 전후 세계질서에 대한 8개 항에 합의하였다. 그 중 4항 “국제무역과 자원에 대해 모든 국가에게 균등한 기회를 도모한다” 부분이 국제경제 질서와 관련이 있고 자유무역을 천명한 조항이다.

3)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연합국의 국제회의로 전후 국제경제 질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4) 국제수지가 일시적인 불균형을 겪는 국가에 용자를 제공하여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5)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가맹국 경제부흥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장기용자를 위해 설립되었다.

Organization; ITO) 설립은 난항에 부딪혔다.

ITO 설립은 미국과 UN이 주도하였다. 특히 미국은 1945년 “국제무역 및 고용확대에 관한 제안”을 통해 ITO 설립을 주창하였다. 이 기구는 국제시장에서 상품무역과 분배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고용 및 소비를 증대시켜 세계경제 활성화의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 2차에 걸친 예비회담 끝에 1948년 하바나에서 23개국이 ITO 설립에 합의하였다.⁶⁾

한편 미국은 ITO구상발표와 함께 관세 상호인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세인하 교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947년 제네바회의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 완성되었다. 원래 GATT는 ITO헌장 중 무역정책에 관한 부분협정으로서 작성되고 관세교섭부분을 다루는 보조기관의 성격이었다.

그러나 하바나헌장에서 국제무역 규범이 너무 엄격하고 각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참가국 비난이 점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참가국들이 비준을 얻지 못하고 특히 ITO설립이 통상문제에 대한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미국의회의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여 미국 행정부가 비준요청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ITO 설립은 무산되었다.

이렇게 되자 23개 참가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베네룩스 3개 국 등 8개국은 GATT협정이라도 성립시키기 위해서 1947년 10월 잠정적용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를 채택하였다. 이렇게 GATT는 ITO부속협정이 되지 못하고 잠정협정 형식으로 1948년 1월1일 발효되었다.

2. GATT의 목적과 역할⁷⁾

GATT는 국제무역 규범으로서 사실상의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6) 이 회의는 하바나회의인데 유엔이 주도하였으며 공식명칭은 ‘무역과 고용에 관한 유엔회의’(UN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이다. 이 때 채택된 ‘국제무역기구 설립에 관한 헌장’을 하바나헌장이라 한다.

7) 박형래·박영기(2004) 국제무역환경론, 두남, p.90-91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GATT규범의 기본목적은 세계무역 확대를 통해서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 유지와 자원의 완전한 달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장애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들고 있다. 이런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유용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규범에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호양허의 원칙, 둘째 최혜국대우 원칙(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셋째 내국민대우원칙(NT; National Treatment), 넷째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등이다.

이러한 목적과 원칙을 바탕으로 GATT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기 위한 국제무역 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1947년 제네바에서 시작된 제1차 국제무역협상을 시작으로 케네디라운드(제6차 국제무역협상), 동경라운드(제7차 국제무역협상)까지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히 동경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표준규정, 허가규정 등 국제규칙이 제정되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제8차 국제무역협상)에서는 세계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금까지 국제무역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분야, 농산물분야와 지적재산권분야의 규범을 포함하고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정식을 출범시켰다. 둘째 무역정책상의 행동을 규율하는 국제무역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WTO설립이전까지 GATT규범에 의하여 국제무역이 규율되어 국제무역법전의 성격을 가졌다. 셋째 GATT는 국제무역 규범의 해석기관과 무역규범을 둘러싼 대립과 분쟁의 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GATT는 정식 국제조약이 아니라 정부 간 잠정협정이었기 때문에 권고사항에 대해 해당 정부가 거부했을 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서 많은 한계점을 노출시켰다.

3. GATT 주요 규범

GATT의 규범은 크게 일반원칙과 예외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다

음 장에서 다룰 다자간섬유협정(MFA)와 관련된 규범들 중심으로 다룬다.

3.1 GATT의 기본원칙

GATT의 일반원칙은 무차별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차별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호혜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즉 GATT는 기본적으로 관세 및 기타 수량제한을 포함한 비관세장벽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 한 국가가 관세를 인하하면 상대국 역시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관세의 경우 최혜국대우 조항에 대한 예외로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 형성을 인정하고 있다. 수량제한조치를 허용하는 경우, 첫째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째 식량의 자급자족의 위협을 받을 경우, 셋째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넷째 덤핑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정리한다.

(1) 최혜국대우 원칙(제1조)

이 원칙은 특정 국가에 제공한 최고의 혜택은 다른 회원국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회원국들이 무역 상대국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서 국제무역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2) 내국민대우원칙(제3조)

이 원칙은 일단 수입된 상품은 국내세 및 국내규범에 의해서 국내제품과 동

등한 대우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다. GATT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수입 물품과 국내물품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은 무차별원칙 측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최혜국대우 원칙은 한 국가가 자국의 무역상대국들 간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부여하라는 것이다. 즉 수입품들 간에 차별금지 조항이다. 이에 비해 내국민대우 원칙은 수입국내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의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하라는 것이다. 즉 국산과 수입품 간 차별금지 조항이다.

(3)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6조)

GATT규정은 수출품가격이 국내에서의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출되거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상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한다. 덤핑인 경우 반덤핑관세를, 보조금인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들을 규정하고 있다.

(4) 수량제한금지(제11조)

국제무역에서 GATT회원국은 관세, 조세,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여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 등의 부족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제한이나 국제무역에서 상품의 분류, 등급, 판매에 관한 기준 또는 규칙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수출 및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을 쿼타금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예외로서 부과되는 수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라 하더라도 완전히 비차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5) 긴급수입제한조치(제19조)

국내산업이 수입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잠정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GATT의 예외조항이다. 일명 세이프가드(safe guard)조항으로 불린다.

제2절 GATT체제의 국제무역협상

GATT는 WTO 설립 전까지 세계무역확대를 위하여 관세인하와 수입제한조치 철폐 등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추진하였다. 국제무역 환경이 변함에 따라 8차례에 걸쳐 국제무역협상 추진하여 수정보완을 거듭해왔다. 다음에는 GATT 주관 하에 개최된 주요 국제무역협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제6차 국제무역협상 : 케네디라운드

1.1 케네디 라운드의 성과

세계2차 대전 후 유럽경제의 부흥은 미국의 마샬플랜⁸⁾에 의한 원조에 크게 힘입었다. 선진경제국으로 진입한 이들 국가들은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추진은 결국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초래하고 이것이 미국의 대외경제거래에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당시 케네디 행정부는 GATT의 메카니즘에 착안하여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무역협상을 개최하였다.

케네디 라운드의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합의되었다. 첫째 관세율인하에 있어서는 선진제국이 공산품 수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의 인하폭은 평균

8) 제2차 대전 후 서구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계획으로, 그 목적은 서구 여러 나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시키려는 것이다. 이 계획에 의해 유럽 여러 나라의 미국무역에 대한 의존성은 감소하게 되었으며, 유럽 16개국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형성했다.

30-40%에 달하였다. 이러한 인하율을 일시에 실현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197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둘째 화학제품에 있어서 관세인하가 별도의 협정에 포함된 이유는 미관매가제도가 비관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협정에 체결에 따라 이 제도는 미국의 관세율표에 포함되었고, 주로 서유럽 제국과의 협상에 의하여 양 지역 간 평균 50% 인하되었다. 셋째 국제반덤핑법은 GATT의 제6조를 비롯한 관련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정무역을 기하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넷째 세계 곡물협정은 국제소매가격 기준 설정과 후진국에 대한 곡물원조를 내용으로 하는데 당초 시도되었던 국제농산물 무역의 확대에 비하여 하등의 실질적인 업적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무역협상을 개최하였다.

1.2 케네디 라운드의 의의

케네디라운드는 1950년대의 경제부흥과정이 완료되고,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에 의한 무역기회의 창출을 바라는 각국의 열의를 반영하여 탄생하였으나 교섭의 기회, 추진에 있어 주도권을 발휘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당시 미국은 경제면에서 GNP가 여타 자유주의 국가 전체의 GNP에 필적할 정도였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대외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의회, 산업계, 노조를 포함한 자유무역 추진세력에게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또한 이 같은 미국 태도의 이면에는 EEC의 역내, 역외관세 차이가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그러나 케네디라운드는 그 결과에 있어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농산물무역의 확대, 관세평가제도, 수입과징금, 차별적인 수입제한에 관해서 제대로 결론을 맺지 못했다. 또한 선진국의 이해 조정에 그치고 개도국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학품·기계류 등 선진국 제품에 대해서는 90% 이상 관세인하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열대산품은

42%에 그쳤을 뿐 아니라 이 중 2/3의 인하폭이 50% 미만에 머물렀다. 둘째 코피·코코아·섬유원료 등 1차 산품에 대한 상품협정이 기대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경쟁력 있는 상품이 별로 없는 개도국들에게는 일반적인 관세인하가 별 의미가 없었을 뿐더러 기존의 혹은 장래의 특혜폭을 오히려 축소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케네디라운드에 실망한 개도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GATT협상에 반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설립으로 귀결되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6차례 협상결과 관세가 대폭 인하되자 비관세조치에 따른 무역장벽이 발생하게 되어 GATT의 난제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2. 제7차 국제무역협상 : 도쿄라운드

2.1 도쿄라운드 배경

선진제국이 사상 유례없는 호경기를 누렸던 1960년대 추진된 케네디 라운드는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노력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경제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1960년 중반부터 누적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국제무역 자유화를 주도하던 미국의 위상을 흔들었다.

금환분위제도가 붕괴되고 환율불안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을 가져왔고, 금융과 통화 면에서 보호주의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1971년 미국이 모든 수입상품에 대하여 10%의 임시부가세를 부과하는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1973년에는 오일파동으로 다자간섬유협정(MFA) 체결을 비롯하여 비관세장벽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신보호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세계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자 새로운 무역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게 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보호주의가 대두되었다. 1950년대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었던 미국경제는 60년대에 EEC와 일본경제의 성장으로 절대적 우위를 상실하였다. 한편 미국 국제수지의 만성적 적자로 달러 신인도가 저하되어 국제적 위상이 떨어졌다. 또한 1973년 오일과동 이후 지역별, 국별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신보호주의가 발생하여 GATT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둘째 지역주의 강화로 국제경제구조가 다극화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1968년 역내관세를 철폐하는 관세동맹을 결성하여 EEC가 되었다. 1973년에는 영국, 아일랜드와 덴마크를 신규로 참여하여 유럽공동체(EC)로 확대되었다. 또한 개도국들도 경제 블록화를 추진하고 산유국들에 의해 자원민족주의가 확대되었으며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도 세계경제구조의 다극화를 촉진하였다.

셋째 무역장벽이 다양화되었다. 지금까지 관세가 주요 무역장벽이었으나 6차례 국제무역협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낮아졌다. 그러자 이제 비관세장벽이 주요 무역장벽으로 등장하였고 석유, 식량 등 기초원자재 보유국의 자의적 수출규제가 만연하여 새로운 무역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GATT체제가 동요하자 1973년 도쿄에서 개최된 GATT각료이사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추구하는 제7차 국제무역협상을 출범하게 되었다.

2.2 협상의 진행과 성과

도쿄라운드는 10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되었다. GATT의 관세인하 노력은 지속되었고 세계 주요 9개국 선진국시장의 관세율이 평균 33.3%,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4.7%로 인하되었다. 이때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은 관세를 인하하는 '조화관세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제무역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농산물부문과 셰이프가드

부문에 대한 협상은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을 규제할 수 있는 협정문을 제정하였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국가들만이 서명하였다.⁹⁾

도쿄라운드에서도 관세인하와 일부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폐 내지 완화가 이루어져 국제무역 자유화는 진전되었다. 주요 제국별 공산품에 있어서 명목관세율의 평균인하율을 비교해보면 미국 33%, EEC 22%, 일본 44% 및 캐나다 40%이다. 이와 같이 합의 본 관세율 인하는 1980년 초부터 8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실현되었다.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정부조달협정, 관세평가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기술장벽제거 협정, 덤핑방지협정 개정 등의 체결이다. 이러한 협정은 그 동안 어려웠던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제8차 국제무역협상 : 우루과이라운드

3.1 협상배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추진된 배경은 1980년대에 들어 세계경기가 제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장기간 침체를 보인 데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무역질서가 보호주의에 휩싸이게 되어 GATT 체제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특히 GATT에서 벗어난 각종 조치의 남발, 반(反)덤핑·상계관세의 남용 등이 GATT 위상을 위축시켰고, 경제블럭화가 진전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른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마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할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한 요구가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증대되었다.

9) 이 협정은 GATT 전체 회원국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협약'(codes)이라 불린다.

3.2 협상 진행과 성과

1986년 9월 우루과이 폰타델에스테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국제무역에서의 시장개방 확대, GATT 체제 및 규율 강화, 농산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창설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협상체제와 주요의제는 크게 상품협상 그룹(GNG)과 서비스협상 그룹(GNS)으로 나뉘었으며 무역협상위원회(TNC)가 양대 협상을 총괄했다. 상품 협상 그룹은 시장접근 분야, 규범제정 분야, 신(新)분야로 나뉘어 총14개의 협상의제를 포함하고, 서비스 협상 그룹에서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문제를 협상의제로 삼았다. 또한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GATT에 위배되는 조치를 철수하겠다는 각료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시토록 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당초 1990년 12월말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EU가 농업보조금 감축안에 대하여 의견대립을 보임으로써 타결에 실패했다. 1991년 4월 협상개시와 함께, 종전 15개의 협상의제를 7개로 대폭 조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당시 GATT 사무총장이었던 둔켈이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협상이 급진전되었다. 그해 1992년 11월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의 최대과제였던 미국과 EU 간의 농업보조금 감축문제가 EU의 양보로 합의되고, 1993년 7월 도쿄 서방선진 7개국(G7) 회담에서 미국·일본·EU·캐나다가 공산품 시장접근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협상타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무역협상위원회는 미국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시한에 맞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의 최종시간을 1993년 12월 15일로 설정한 후, 수차례의 의견조정을 거쳐 결국 일괄 타결을 이루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무역규범을 실제

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수립하였다. 둘째 상품의 관세인하 및 무관세화를 통해 기존의 관세장벽을 대폭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회색조치 등 비관세장벽도 대폭 완화하였다. 셋째 각종 수량제한 조치로 보호되어 왔던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단 관세화를 통해 WTO체제 내로 끌어들이므로써 농산물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켰다. 넷째 MFA에 의해 규제되어 오던 섬유류도 10년 간 걸쳐 완전히 WTO체제내로 통합함으로써 섬유 무역 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각국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았던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도록 규범화하였다. 여섯째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자의적인 무역규제의 여지를 축소시켰다. 일곱째 최근 국제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무역 분야에 별도의 무역규범을 새로이 제정하고 이 분야의 시장개방계획을 작성토록 함으로써 서비스무역이 확대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여덟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수립함으로써 이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3.3 우루과이라운드 의의

과거 협상과 비교할 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가지는 두드러진 특징은, 그동안 GATT 밖에서 관리되어왔던 농산물·섬유·철강 등의 무역문제를 포괄한 점과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등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크게 걸려 있는 과제들이 협상의제로 포함되어 개발도상국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 점이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은 자유무역을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각국의 무역장벽을 대폭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환경을 보장하는 규범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3장 섬유무역 보호주의 대두

제1절 섬유산업 보호주의 태동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GATT체제는 국제조약으로 체결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국제무역협상을 지속함으로써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국가 간 상품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GATT체제의 노력으로 1950~60년대 국제 무역질서를 자유무역 기조로 변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1955년도에 일본이 GATT에 가입한 이후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후 경제발전을 추진하던 일본, 홍콩 등이 비교우위가 있던 경공업의 주요산업인 섬유의류제품을 미국 및 유럽시장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이 급증하였다. 이런 섬유의류제품의 빠른 수입증가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일본과 개발도상 국가들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섬유의류제품 수입규모가 상당한 선진국들은 1950년대 중반 개도국들의 섬유의류제품 수출급증에 대하여 GATT 제19조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만으로 시장교란을 방어하기 어렵고 자국 내 섬유의류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직물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제한조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일본·홍콩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저가의 면제품을 구미시장에 공급하면서 급속히 시장을 확대해가자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내국시장의 잠식과 함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사용자조합과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선진국 들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GATT 제19조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만으로는 시장교란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다 강력한 수단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GATT 체제하에서 교섭 결과, 1961년도에 단기면직물협정(STA: Short-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GATT가 추구한 대원칙인 무차별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 GATT와는 별도로 섬유무역만을 규율하는 최초의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수입국의 수량규제에 의한 국가별 쿼터제도의 기본을 이루었다.

이어서 미국은 자국내 직물제조업자들의 로비활동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협상을 주도하여 1962년 10월부터 1967년 9월까지 5년간 유효한 장기면직물 협정(LTA: Long-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 1962-1973)을 체결하였다. 주요 규제 대상품목은 면제품으로 우리나라는 1964년도에 28번째로 체결하였다.

장기면직물협정(LTA)¹⁰⁾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섬유수요 둔화, 개발도상국과의 임금격차 확대,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선진국의 면제품 비교우위 상실, 실업문제 악화 등을 배경으로 1962년 10월에 5년 기한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기존 단기면직물협정과 마찬가지로 수입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면직물에 대하여 전년도 실제 수입량보다 적지 않는 수준에서 쿼터제를 운영하며 정상적일 때 연 5%의 쿼터증가를 규정하였다. 수입국이 비규제품목 혹은 수출국가에 의한 시장교란상황에 직면하거나 그 위협이 있을 때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GATT의 일반원칙을 위배하면서 섬유제품 무역에 대한 포괄적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석유화학공업의 발달로 인해 폴리에스터 등 인조섬유의 생산과 사용이 증가하였다. 이 제품에 대한 세계무역의 증가로 면제품만을 대상으로 체결한 장기면직물협정(LTA)은 수입규제 효과가 낮아지게 되었다. 즉 이 협정은 면제품수출보다도 인조섬유제품 수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조섬유제품 수출국은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게 되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또 다시 미국 편직의류생산업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¹¹⁾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섬유 수입국가들은 자국 산업보호

10) LTA는 애초 선진국의 산업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합의된 국제무역협정이었지만, 이 조정의 실패로 인해 1967년 3년간, 1970년 3년간으로 2차례 연장되었다. 연장 만료연도 이듬해인 1974년에는 면직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다자간섬유협정(MFA)이 체결되었다.

등을 위해 비면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GATT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근거하여 섬유무역의 질서있는 발전과 수출입시장에서의 교란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수입국이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수량제한(쿼터)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다자간섬유협정(MFA)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 간 협정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제한을 철폐하는 동시에 섬유수입에 의하여 시장교란이 존재하는 경우 관계 수출국과 협의를 거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 협정은 GATT 체제가 진행되는 동안 출범 당시 추구하였던 자유무역주의 추구에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것은 GATT 예외규정인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GATT 제11조 제2항), 웨이버(동 제25조 제5항),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동 제18조 BOP조항), 조부조항(Grandfather 조항) 잔손수입제한조치와 함께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국가별로 쿼터(QUOTA)를 정하여 수입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이 설정한 GATT 대 원칙과 배치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제2절 신보호주의와 다자간 섬유협정(MFA)

1. 신보호주의 대두

1960년대 초까지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미국이 절대우위를 가졌으나 60년대 후반부터 상당수 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서구 및 일본으로 이전하고 다시 신흥공업국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은 상대적으로 정체됨에 따라 국제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선도부문의 출현이 지연됨으로써 국제간의 산업구조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교우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제분업이 체계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선진공업국 간의 수평적 분업질

11) 이무영, 다자간섬유협정(MFA)체제에 관한 연구(한국섬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중심),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1988, pp.115.~117.

서는 무너지고 선후진국간의 수직적 분업질서 또한 동요되어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및 EC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 일본제품은 미국-일본간 일본-EC간 무역마찰을 심화시켰다. 여기에 신흥공업국들의 선박·철강제품 등의 경쟁력 강화로 중화학공업제품까지 비교우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었다.

74-82년 기간 중 선진국들의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0%내외를 지켜온 반면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8.5%를 유지하였다. 시장점유율도 선진국의 경우 82년 기준 67.8%로 낮아지는 반면 신흥공업국들은 75년 4.1%에서 7.5%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쟁력 약화는 결과적으로 수출부진과 수입증가로 국제수지 적자를 확대시켰다.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의 상대적 증가로 여타 선진국에서 사양산업이 출현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개편의 압력이 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기업 및 노동자들이 충분히 적응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차에 걸친 석유파동은 사양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을 가중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 정부는 산업구조를 단행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때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크므로 단기적으로 사양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섬유산업이었다. 선진국의 이러한 섬유산업의 보호는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을 저지 및 지연시킴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렸고 수출개도국에게 수출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성장의 전기를 빼앗은 산업구조의 지연비용을 전가시켰다.

고전적 보호주의는 비교우위 잠재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경쟁산업으로 발전시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는 데 있었다. 이에 비해 신보호주의는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교란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다자간 섬유협정(MFA)경과와 내용¹²⁾

2.1 MFA 제1기(1974~1977)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화학섬유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천연섬유를 대신한 화학섬유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면직물에 대한 규제만 다루었던 LTA는 국제무역 협정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다. 또한 선진 국가들의 화학섬유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서 산업보호 목적으로 면직물 이외에 모, 인조섬유 등의 다른 섬유류¹³⁾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LTA 3차 만기 연도 이듬해인 1974년에 다자간섬유협정(MFA)이 체결되었다.

MFA 제1기에는 섬유류의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무역자유화 실현을 위해 주요 수입국¹⁴⁾인 선진국들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또한 협정 이행의 감시를 위해 다국적 감시기구인 TSB(Textile Surveillance Body)를 설립하였다. MFA는 시장교란기준에 따른 수입제한을 규정하면서 부속서 A에서는 시장교란¹⁵⁾ 발생시 관련 수출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60일내에 미합의시 부속서 B에서 규정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1년간 일방적인 수입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수입이 시장교란을 증가시킬 경우 수입국, TSB간 협의를 통해 수입량의 연 증가율이 6%이하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시장의 유연성을 부과하기 위해 몇 가지 허용범위를 규정하였다. 1년 간 제한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쿼터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품목의 7% 초과수출을 허락하는 전용(Swing), 협정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참가국간 협의를 통해 2개년도 사이에 조상 혹은 이월(Carry forward 혹은

12) 신현중·노택환, 다자간섬유협정(MFA)의 역사적 의의와 경제적 영향, 『사회과학연구』 12권 2호, 영남대학교, 1992, pp419-446을 주로 참조하였음.

13) 규제대상품목은 면, 모, 인조섬유, 혼방소재에 의한 사(絲), 원단제품 등이고 의류와 인조 및 합성섬유 등은 시장교란이 있을때 적용하는 품목임.

14)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 EC, 캐나다, 북유럽제국, 오스트리아, 호주, 스위스, 일본이며 이에 대응되는 주요 수출국으로는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필리핀이다.

15) 여기서 말하는 시장교란의 요인은 특정 수출국으로부터의 특정품목의 급격한 수입 증가나 유사상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입가격 등이 해당된다.

Carry over)방식에 의해 초과 한도를 각각의 방식을 합하여 10%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MFA 협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제3국 제품이 우회하여 수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수출금지조항도 삽입되었다.

이와 같이 MFA 제1기에는 GATT체제 하에서 운영되었던 LTA 보다는 완화된 규정들을 허용하면서 국제 섬유무역 자유화로 진전된 것이나 GATT의 무차별원칙과 일반적 수량규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선별적 규제를 수용한 점에서는 GATT체제로부터 이탈된 국제무역협정인 것이다.

2.2 MFA 제2기(1978~1981)

제1기를 거치면서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해 세계 섬유무역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동 시기인 1973년도에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으로 원유수출국들이 원유고시가격을 17% 인상하고, 원유생산은 월 5%씩 감산하기로 함에 따라 중동산 원유가격은 폭등하여 1차 오일쇼크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전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산유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국제수지적자로 돌아서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각국들은 한편으로 전력·석유 공급 삭감,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MFA를 연장하려 하였다. 예컨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유럽지역 국가들은 외국 섬유제품의 수입증가로 자국 섬유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실업률이 급증하자 일방적 쿼터 조정, MFA 탈퇴 위협 등으로 자국 보호주의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기존의 MFA와 함께 MFA연장의정서를 통해 선진

수입국에 의한 일방적 수입규제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제1기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수입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특정 MFA규정 적용 중지를 허용하는 합리적 이탈조항(Reasonable Departure)¹⁶⁾을 마련함으로써 MFA의 기본정신을 퇴색하게 하였다. MFA하에 협정당사국들의 합의만 있으면 MFA를 이탈할 수 있어 섬유무역의 규제가 한 단계 강화된 것으로 지금까지 흐름을 역류시킨 독소조항이 된 것이다.

2.3 MFA 제3기(1982~1986.7)

제2기를 거치는 동안 이란의 석유 수출정지로 인해 세계경제는 다시 석유수급 불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부터 1979년 사이 1배럴당 30달러로 유가가 상승하였다. 이른바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여 세계경제는 또 한번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섬유 수출국인 개발도상국과 섬유 수입국인 선진국 사이에 3번째 MFA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¹⁷⁾MFA 연장 논의는 1981년 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는데 1982년 1월부터 1986년 7월까지 4년 7개월간 재연장 합의로 3기를 이어나갔다.

제3기에서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준쿼터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섬유부문 선진개도국인 우리나라와 홍콩의 수입물량을 감축하기 위해 합리적 이탈조항의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입급증방지조항(Anti-Surge)이 신설됨으로써 주요 수출개도국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조항은 상호 협의된 쿼터내에서도 갑작스런 수입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국 시장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지만 결국 선진국 의지가 반영된 협상 결과가 나왔다.

16) 합리적 이탈조항이란, 특별한 경우에 특정요소로부터 공동합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탈은 가장 빠른 시일에 관계 참가국들은 약정의 범위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17) 동아일보, 「개도국 사활 건 섬유전쟁」(1981. 11. 17)

2.4 MFA 제4기(1986.8~1991.7)

1986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GATT 섬유위원회에서는 GATT 체제복귀와 MFA 체제 연장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1991년도까지 5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으로 섬유 수출입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즉 미합의 시 일방적 수입규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대신 섬유감독기구인 TSB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발동요건을 까다롭게 하였다. 또한 수입급증방지조항(ASM)과 관련하여 미소진 품목에 대한 쿼터 삭감 조항 개선, 최저적정생산(MVP : Minimum Viable Production) 조항 개선, 시장교란기준 측정에 있어서 증빙자료 제출 강화, 국내산업 피해 측정 시 개도국 상품의 단순한 수입증가 혹은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채택 불가사항들을 합의하였다. 특히 섬유무역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장협정서에서 규제대상 품목의 확대, 경쟁관계, 우회수출금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수입국이 규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섬유류 주요 수입국인 선진국들에게도 유리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2.5 MFA의 내용

<표 3-1>은 1960년대의 STA와 LTA를 포함하여 현재의 MFA (IV)에 이르기까지의 기간·규제대상·시대적 배경 등을 요약하고 있다. <표 3-2>는 1974년의 MFA(I)으로 부터 MFA(IV)의 주요내용을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MFA의 변천과 정상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은 노동집약재이며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하다. 입지면에서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당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이 큰 만큼, 섬유무역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그 때 마다의 시대적 상황 및 정치적 동기 등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표 3-1> 섬유류 무역체제의 변천과정

구분	기간	규제대상	시대배경	비고
STA	61.10-62.9	-면직물	-케네디 대통령 선거공약	-최초의 국제섬유류 무역법안
LTA	62.10-73.12	-면직물·50%이상면을 사용한 의류	-STA의 연장	-2차연장(한국 64년 가입 65년 발효)
MFA1	74.1-77.12	-면·모·인조섬유, 관련의류	-화섬의 중요성 대두 -닉슨대통령의 선거공약	
MFA2	78.1-81.12	-면·모·인조섬유, 관련의류	-제1차 석유파동	-1차연장
MFA3	82.1-86.7	-면·모·인조섬유, 관련의류	-제2차 석유파동	-2차연장
MFA4	86.8-93.12	-식물성 섬유 및 견혼합섬유 포함	-더몬드 법안 -종합무역법안	-3차연장

자료 : 신현중·노택환(1992) p425

주 : 기타섬유(황마, 야자껍질 섬유, 사이잘삼)와 순견직물 제외

둘째, 규제대상품목은 STA나 LTA 당시의 면직물로부터 1974년 MFA(I) 이후 면·모·인조섬유 및 이들로 만든 의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1986년 MFA(IV)에서는 식물성섬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섬유류 및 섬유제품이 규제대상이 되었다.

셋째, 연증가율이나 융통성조항과 같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은 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왔다. 즉 최초에는 연증가율을 6%로 규정하였으나 합리적 이탈조항(reasonable departure clause)의 신설로 인해 6%의 최소증가율이 예외로 취급될 수 있는 여지를 둬으로써

연증가율이 사실상 축소되었다. 쿼터품목 간에 전용(swing)·조상(繰上; carry forward)·이월(carry over)할 수 있는 융통성조항(flexibility clause) 역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어 왔다.

<표 3-2> MFA의 주요 내용비교

	MFA I	MFA II	MFA III	MFA IV
목 적	• 석유류 교역 확대 및 점진적 자유화	• 좌동	• 좌동	• 궁극적 목표는 GATT복귀임 • 개도국 수출증대를 위한 쌍무협정개선
수입제한근거 (reasonable departure)	• 규정없음 • 부속서A(시장교란에 의한 규제)	• 합리적 이탈 (reasonable departure)조항의 신설	• 합리적 이탈조항의 삭제 • 부속서 A에 의한 규제	• 좌동(수정되었지만 이탈조항 복구) • 좌동(시장교란발동 요건의 명료화)
연증가율 (growth rate)	• 시장교란재발 및 악화의 명백한 증거 없는 한 6%이상 적용	• 좌동(단 합리적 이탈행위에 의해 6%이하 적용가능)	• 6%이상(단 시장교란 재발악화시 협의 후 6%이하 적용)	• 좌동(연장의정서에 명시)
융통성 (flexibility)	• 전용 : 5~7% • 조상+이월 : 10%	• 좌동(단 시장교란 악화시 5%하향가능) • 좌동	• 좌동(단 소비증가율 감소시도 5%이상) •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가능	• 좌동 • 좌동
쿼터량 삭감 (cutback)	• 규정없음	• 기준쿼터량삭감 (규정 없으나 현실적으로 reasonable departure에 의함)	• 다량쿼터보유국에 대한 삭감가능 규정 • 양자간 협정협상시 제기가능 규정	• 삭제(쿼터량삭감 조항 철폐)
수입급증방지 (antisurge)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급격한 수입증가 (10%이상)방지도입	• 삭제(수입급증방지 조항철폐)
소량수출국우대	• 우대조항 막연히 규정	• 좌동	• 구체적 규정(규제량 융통성증가율 우대)	• 소량수출국에 최빈국개념 도입

자료 : 상공부·한국석유산업연합회(1986.6)

넷째, 쿼터량 삭감이나 수입급증방지와 같이 쿼터량 감축을 허용하는 조치들은 MAF(I)에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쿼터량 삭감은 MFA(II)에서 채택되었고

수입급증방지는 MFA(Ⅲ)에서 채택되었다. 이들 중 쿼터량 삭감조항은 시장교란과 국내 소비둔화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 MFA가 허용하고 있는 쿼터량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입급증방지조항은 쿼터내에서 지속적이고 급격히 증대되는 수입에 대한 규제조치로서 EC의 주장에 의하여 연증가율 10%이상이거나 시장점유율 1%이상·소비실적 50%이상인 품목에 융통성을 보류하거나 수입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1986년 MFA(Ⅳ)에서 철폐되었다.

다섯째, 소량수출국에 대한 조항은 초기에는 개도국을 우대한다는 막연한 규정을 두었으나 MFA(Ⅲ)에서 이러한 우대조치는 내용이 보다 명확히 명시되었다. MFA(Ⅳ)에서는 소량수출국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아이티·몰리브와 같은 최빈국을 우대하기로 합의하였다.

3. MFA의 제도와 운용 평가

3.1 MFA 존재의 평가

MFA의 기본목표는 궁극적으로 **섬유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통한 무역확대**였다. 실제의 운용결과를 보면 섬유무역에 대한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개도국이 선진국에 하는 섬유수출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표 3-3>에서 보듯이 1980년 이후 1987년까지 MFA에 바탕을 둔 쌍무협정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였다.

GATT 규정(제19조)에 의하면 수입급증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국가는 국내산업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이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MFA는 실제 피해보다는 시장교란이나 시장교란 위협에 있을 경우도 발동할 수 있으며 더욱

이 특정 국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4>는 GATT와 MFA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비교하고 있다. MFA는 특정성 때문에 GATT규정보다 훨씬 더 보호무역적 특성을 갖는다.

<표 3-3> MFA에 의한 쌍무협정국의 수

	80	81	82	83	84	85	86	87
대미국협정국	17	17	19	20	24	27	22	30
대EC협정국	23	23	23	23	23	23	23	19
대캐나다협정국	13	13	15	18	18	19	19	20
대EFTA협정국 ⁽¹⁾	24	24	24	27	38	52	43	41

자료 : 김정수·한진규(1990.3) p.73

주 : (1) 83년까지는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3국에 대한 통계이고 84년 이후는 노르웨이가 포함된 수치임

<표 3-4> GATT 제19조와 MFA에 의한 세이프가드 비교

	GATT 제19조	MFA
발동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serious injury)를 받거나 받을 우려 - 수입품가격에 대한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교란(market disruption)이나 시장교란의 위험(real risk of market disruption) - 유사상품과의 가격차이가 있을 경우도 가능
규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출국(무차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섬유수출개도국(특정국에 대한 선별적 조치 가능)
발동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통고의 의무 및 긴급한 경우 제외하고 사전 협의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에 기초한 수출규제(합의될 경우 수입국에 의한 일반적 수입규제도 가능)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동국조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에 대한 양허 또는 여타의무의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조치 및 대상제공에 대한 규정없음 - 수입국에 대한 구조조정조치의무회(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규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량쿼터(수입국쿼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무쿼터(수출국쿼터관리)

자료 : 신현중·노택환, 1992, 재구성

이와 같은 섬유무역에 대한 규제가 성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되어 온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산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의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생산·고용 면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섬유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일찍부터 시행되어 왔다.

둘째 섬유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므로 노동조합의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체로 산업에 고용된 노동력이 미숙련노동이므로 타산업으로 이전 역시 어려워 산업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섬유산업은 그 입지면에서 산업의 지역적 집중이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므로 그 산업이 당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이익단체의 압력이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가 쉽다.

셋째 섬유산업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업화 초기의 유치산업으로 육성되기 적합한 산업인 반면,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어 수출국인 개도국과 수입국인 선진국 간에 무역마찰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다.

섬유무역에 대한 이러한 규제조치가 짧게는 20여년 길게는 30여년 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FA는 섬유수입국과 섬유수출국, 선발수출국과 후발수출국, 수출국의 쿼터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입국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을 가져 온다. 이들의 경우 대체로 전자그룹들은 섬유무역의 규제를 원하는 주체들인 반면 후자그룹들은 섬유무역의 자유화를 원하는 주체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섬유무역이 유일하게 GATT원칙 밖에서 예외적으로 운용되었던 것은 전자그룹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후자그룹의 그것을 압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후생보다는 생산자의 보호를 우선해야하는 선진국의 이해관계와 기존의 대규모 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이해관계

합치가 MFA준속의 배경이 되어왔다. 즉 선진국의 경우 이를 통해 개도국의 섬유수출증대를 계속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유산업의 구조조정보다는 수입규제를 통한 섬유산업의 보호가 보다 용이한 정책수단이라는 잇점을 누린 반면, 기존의 대규모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MFA에 의한 기득권유지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성장과 수출증대를 이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제품고급화까지도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MFA의 다자간협정방식이 개별적인 쌍무협정이나 일방적인 제한조치만으로 섬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보다 수입규제효과의 극대화를 이룩함에 있어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나 EC국가가 MFA를 체결하지 않고 독자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할 경우 정보·인력 면에서 많은 코스트가 요구되지만 다자간협정의 경우 이러한 코스트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EC국가들이 개별적인 쌍무협정을 통해 섬유제품의 수입을 철저히 규제할 경우 그 제품들이 자국시장으로 몰려 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러한 다자간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다자간협정에 참여했던 것은, 선진국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였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협상능력의 취약성을 이러한 다자간협정 방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셋째 MFA에 의한 수입규제는 긴급수입제한에 의한 것보다 정책수단으로의 유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긴급수입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는 MFA보다 규제발동절차도 훨씬 복잡하고 모든 수출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규제국들의 보복조치를 불러올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이다.

3.2 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MFA의 핵심적 목표는 시장교란이 발생할 때 당사자국 간의 협의를 통해 수출국에게는 안정적인 수출기회확대를 제공하고, 수입국에게는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MFA 규정 중에는 지나치게 모호

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념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자의적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선후진국 간의 많은 논란을 가져온 문제 조항 들이 다수 존재 하고 있다.

(1) 시장교란(market disruption)의 개념

MFA는 부속서A에서 시장교란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둘째 특정품목의 특정공급액으로 부터의 수입이 현저히 또는 급격히 증대되는 경우, 셋째 외국의 섬유제품이 비슷한 유사상품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개념의 모호성에 따른 적용의 자의성이 문제되고 있다.

첫번째의 경우, 그에 대한 판정은 시설가동률, 판매량, 시장점유율, 이윤, 수출실적, 고용, 생산성과 투자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수입국 정책담당자들은 일부지표만으로 피해여부를 결정하므로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두번째의 경우 시장교란을 발생시킨 특정국가나 특정품목을 가려내기란 용이하지 않다. 세번째의 경우 실제수입품과 유사품의 동질성을 정확히 가려내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의 정확한 산정 역시 용이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개념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 많은 문제점이 수반된다. 예컨대 특정산업의 피해가 특정상품의 수입증가에 의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국들이 이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MFA(IV) 이후 수입국의 섬유류 소비능력 하락이 시장교란의 악화 또는 재발요인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선진국의 수입비중이 증대된 것은 비교우위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진국 섬유산업이 그 만큼 비교우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으로 설명되어야한다. 그러면 선진국 자신의 문제를 개도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해석은 부당

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조항은 결국 이를 근거로 수입량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선진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증가율과 융통성(flexibility) 규정

시장교란의 재발 및 악화의 우려가 있는 예외적 상황의 경우 합의에 의해 6%이하로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MFA는 원래 6% 이상의 연증가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었다. MFA(II)이후 합리적 이탈(reasonable departure)조항의 신설로 인해 6%의 최소증가율이 예외로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되었다. 이후 실제로 선진수입국들은 MFA에 규정된 예외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 규정을 남용하였다. 즉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섬유쿼터의 연증가율을 6%이하로 책정함으로써 수출국 대부분 6%이하의 연증가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MFA는 다량소진쿼터품목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융통성 제한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주요섬유수출국의 수출제한효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다량소진품목 등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 때문에 적용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섬유쿼터를 조절하였다. 이것은 주요 섬유수출국에게 무역제한으로 수입국은 보호무역의 도구로 작용하였다.

(3) 쿼터삭감(cut-back)조항

쿼터삭감 조항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쿼터다량보유국에 대하여 MFA가 허용하고 있는 쿼터량을 삭감(cut-back)할 수 있다 것을 명시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이 조항은 세계섬유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라는 MFA의 기본목표와 섬유무역에

18) 1981년 MFA(II)연장협상 막바지에 EC측이 한국·홍콩 등 주요섬유수출국의 쿼터를 삭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 한 규정이다.

서 기존공급국의 무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MFA 6조에 위배된다. 동시에 명확한 기준없이 ‘특별대규제수준’(particularly large restraint level)이니 ‘특정수출국가’(certain exporting participants)등 애매모호한 개념들을 사용하여 쿼터량을 삭감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또한 이 조항은 기존의 주요수출국의 쿼터량을 삭감하여 소규모수출국의 쿼터량을 확대함으로써 수출국간의 이해관계가 상호 상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섬유무역질서가 혼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간의 이해대립으로 대선진국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규정은 실제로 운용할 때 규정의 애매모호성을 이용하여 뚜렷하고 납득할만한 근거없이 남용되었다. 이후 조항은 끊임없이 수출개도국과 선진수입국간의 논쟁과 갈등요인으로 인해 MFA(IV)이후 철폐되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여전히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요수출국에 대한 규제강화를 해오고 있으며 최초의 한미섬유회의에서도 이런 규정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었다.

(4) 수입급증방지(anti-surge)조항

이 조항은 EC가 주장하여 MFA(III)에서 신설된 것이다. 즉 연증가율 10%이상, 시장점유율 1%이거나 ·소진실적 50%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도 융통성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거나 수입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쌍무협정상의 수출규제를 다시 하향조정하는 것은 안정된 무역활동을 저해하게 한다. 또한 전년도 기준 쿼터를 미소진하였지만 올해는 수입이 증가할 때 수입국의 시장교란이나 산업피해를 준다고 간주한다고 하는 것은 선진수입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섬유류 특히 의류 등의 경우 급심한 수요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인 수입급증현상을 개도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MFA(IV)에서는 철폐되었다.

(5) 최저적정생산(MVP:Minimum Viable Production) 개념

고수입 저생산 수준의 군소수입국의 경우 최저적정생산개념에 의해 6%이하의 수입쿼터증가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 MFA(I)이 체결될 때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의 3국에 의해 제안되어 특별조항으로 인정된 후 존속되어왔다. 이들 北歐諸國들은 이 규정을 악용하여 수출개도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선진국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차별적 정책을 운용하여 왔다.

(6) 우회수출(circumvention) 방지조항

EC등 일부 선진국들은 우회수출방지규정에 따라 제3국을 통하여 우회수출된 섬유제품에 대하여 당해년도 쿼터량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당해년도 쿼터량이 소진된 경우 다음년도 쿼터량에서 이를 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수출은 원산지수출국이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수입국과 재수출국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원인규명없이 원산지국의 쿼터를 공제하는 것은 수출국만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우회수출은 수입통관사전에 발견하여 불허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통관을 허용하여 국내판매가 끝난 후 일방적인 조사를 통해 차년도 쿼터를 공제하기 때문에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7) 상호시장개방(reciprocity)조항

이 조항은 선진수입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²⁰⁾ 선진국들은 GATT의 기본정신인 자유무역원칙을 위배하는 MFA를 통해

19) MFA 제1조 2항과 부속서B의 2절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행하면서 개도국에게는 GATT기본정신에 따라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양자 간의 경제력 및 협상력의 격차를 클 때 협상력이 약한 측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섬유무역분야에서는 협상력이 강한 선진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원칙을 저버리고 개도국에게 이 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3.3 GATT체제와 상충성

앞 절에서 MFA의 규정 중에는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많아서 결국 선진국들의 자의적 운용이 이루어지게 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MFA규정이 상당부분 GATT원칙과 충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FA는 서문에서 GATT의 원칙과 목적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제1조 6항에서 'MFA의 제규정은 참가국들에 대한 GATT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로는 GATT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으로 수입규제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MFA가 GATT의 기본원칙과 배치되는 것을 스스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

첫째 GATT 제1조는 최혜국대우원칙(MFN)을 규정하고 있다. MFA의 경우 관세는 무차별적이지만 수량제한의 경우 특정국가에 대해 선별적 차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GATT 제11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수단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MFA는 오히려 이러한 수량제한수단을 중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하고 있다.

둘째, GATT는 긴급수입제한조치(제19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MFA는 시장교란개념을 바탕으로 합리적 이탈조항을 두고 있다. <표 3-4>에서 보았듯이 양자 간 발동요건·발동절차·대응조치 의무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

20) MFA연장의정서 제16절

한다. 따라서 MFA는 GATT에 비해 수입국의 제한조치가 보다 자의적이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별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통보 및 협의 절차 역시 GATT보다 명백하고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 남용의 소지가 많다.

셋째 GATT는 규제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MFA는 규제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필요시 갱신하도록 하였다. 또한 GATT는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국간협의·패널의 설치·이사회결정 및 권고 등을 취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중재하는 직접적인 중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MFA는 직접 중재기관인 섬유감시기구(TSB: Textiles Surveillance Body)를 두고 있다. 또한 GATT 제24조 2항은 중재가 결렬되면 이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보복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MFA에는 이러한 보복관련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MFA의 경우 수입국이 보다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규제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GATT는 제18조·36조-38조를 통하여 ①개도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②개도국의 수출관세품목에 대해서는 무역장벽 완화와 철폐에 최우선을 둔다. ③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키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등의 개도국우대조항을 두고 있다. MFA도 제6조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즉 소량섬유수출국과 최빈국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일부개도국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MFA는 섬유무역에 대한 점진적 자유화와 무역량의 확대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실제로는 섬유수입국들이 그들의 패권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개도국으로부터 섬유수입을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동시에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은 MFA를 통하여 이해관계와 협상능력에 따른 차별적·선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려는 GATT의 정신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3절 MFA의 경제적 영향

197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MFA가 세계 섬유무역에 미친 효과는 지대하다. 개도국들은 섬유산업을 발판으로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도모하려 하였다. 반면 선진국들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산업이 비교우위를 잃게 되었을 때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실업과 경제적 혼란을 방어하기 위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려하였다. 이러한 수출개도국과 선진수입국간의 이해관계 대립은 선진국 주도의 MFA를 가져왔다. 이 MFA는 이들 국가에게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²¹⁾

1. 수출개도국에의 영향

수출개도국은 MFA이전부터 섬유를 수출한 선발개도국과 최근 섬유수출을 증대하고 있는 후발개도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MFA가 섬유수출 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수출개도국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출규제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하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첫째 비교우위가 있는 섬유제품 수출이 제한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다.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각국이 비교우위있는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상호 무역이익을 얻는다. MFA체제하에서는 아무리 비교우위가 있는 섬유제품이라 하더라도 쿼터가 없는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교우위가 없는 상품이더라도 쿼터가 있으면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즉 비교우위 제품이 배제되고 비교우위가 없는 상품이 오히려 수출이 됨으로써 세

21) 실제의 쌍무협정을 통한 규제방식이 MFA의 내용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각국이 처해있는 상황이 나 품목에 따른 경쟁력의 정도가 상이하므로 그 경제적 효과가 시대·국가·품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섬유류에 대한 관세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높고 책정되어 있고 또한 관세율이 가공도에 따라 상이하며 수량규제방식 역시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므로 이것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MFA규정상의 융통성조항이 사용되고 있다는 자체가 쿼터에 의해 비교우위 제품의 수출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쿼터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하더라도 100%소진될 수 없는 만큼 쿼터관리상 마찰적 요인에 의해 수입억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비효율성은 상존한다.

둘째 생산활동의 불안정성으로 시장교란이 발생되기 쉽다. MFA체제하에서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수출개도국과 선진수입국간에 빈번한 협상 등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빈번한 재협상으로 규정이 수시로 바뀔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었다. 이것은 수출개도국 섬유기업들에게 부담되는 리스크로 작동되어 수출 생산활동이 위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더욱 커지게 되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셋째 혁신 노력보다는 기존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MFA체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섬유수출개도국들이 MFA체제에 적극적으로 순응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그 체제를 주어진 여건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통해 되도록이면 많은 쿼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만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수입국산업에 피해를 줄 위험이 없는 제품까지를 협상에 포함시키는 사례까지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주요섬유수출국들은 오히려 MFA하의 규제를 스스로 선호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넷째 섬유산업전반에 대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MFA체제하에서는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쿼터를 얻지 못하면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신규투자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다. 또한 MFA에 의한 규제대상이 점증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국들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를 기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의 위축이 가속화되었다.

다섯째 쿼터관리비용 등 추가비용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늘었다. 수출국이 관리하는 수출쿼터의 허가 및 쿼터소진을 위한 통제에는 막대한 인적·물적 비

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섯째 이러한 부정적 경제적 효과는 모든 국가들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였다. 특정제품이 규제를 받게 되면 그 제품의 생산이 축소된다. 그러면 초과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교우위가 없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품생산 전환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대부분의 섬유수출국들이 개도국이고 특히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 하에서 최적의 생산결합을 해야할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배분의 왜곡은 수출개도국에게 심각한 비효율성을 가져왔다.

MFA가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힌 국가들은 후발 섬유수출개도국이다. 기술적으로 가장 용이한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산업을 특화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공산품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MFA의 쿼터규제가 없었다면 한국, 홍콩, 대만 등과 같은 공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MFA에 의한 기득권자의 보호 때문에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외자도입 등의 정책선택이 저지되어 온 셈이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필요와 잠재력에 상응하는 규모의 공업화와 섬유수출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동시에 선진국의 이러한 MFA규제는 단순히 섬유류수출을 저지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 및 수출업계의 전반적인 개발의지와 수출의지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섬유무역 자유화의 주장이 이들 국가로부터 강하게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홍콩, 대만과 같은 선발섬유수출국의 경우는 오히려 MFA로 인한 기득권유지에 의해 어느 면에서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기존쿼터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새롭게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된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견제할 수 있었으며, 저급의류 등 비교열위품목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유지가 가능하였다. 또한 쿼터가 사전 배정됨으로써 수출 및 생산의 사전예측이 가능해짐으로써 섬유산업의 안정성이 증대되었다.

MFA의 규제가 주로 수량규제이므로 규제한도를 지키면서 고가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액의 증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수출업체들로 하여금 고가상품위주 생산구조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제품의 고급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쿼터량 배정으로 인해 시장과 품목다변화 역시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MFA가 없을 경우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수입규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즉 MFA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라도 섬유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신보호주의적 경향을 고려할 때 오히려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와 시장질서협정(orderly market arrangement; OMA) 등의 회색규제조치 또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장벽에 의해 오히려 섬유수출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다자간협상이 폐지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순수한 쌍무협상에 있어서는 협상력이 약한 개도국으로서는 오히려 MFA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가능성마저 높은 것이 사실이다.

2. 수입선진국에 대한 영향²²⁾

MFA하에서의 쌍무협정을 통한 섬유류의 수입수량규제는 쿼터관리를 수출국에서 담당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VER이라고 볼 수 있다. VER이란 수입국이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쌍무적 또는 다국적 협정을 통하여 수출국이 일부 특정생산물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무역제한조치이다. 따라서 이것이 관세나 수입할당제 등과 다른 기본적 특징은 수출국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되면서 결과적으로 수입국의 수입제한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MFA하의 섬유무역 규제란 결국 이러한 VER를 다자간 협상 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VER이 수입국에 미치는 경제적

22) 신현중·노택환(1992) p430

결국 이러한 VER로 인하여 피규제국으로부터 수입은 cf에서 de로 감소한 반면 비규제국으로부터 수입은 ac에서 bd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결국 VER이 피규제국에서 비규제국으로 수입을 전환하였다(무역전환효과). 이 같은 가격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통하여 VER은 수입국에게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첫째 MFA의 가격효과는 국내유사품의 가격도 상승시킴으로써 국내섬유산업의 생산이 보호되는 생산효과(보호효과)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른 고용효과와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생산효과와 함께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국제수지개선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MFA의 규제방식은 다자간협상방식이라는 관점에서의 이점뿐만 아니라 수출자율규제방식이 갖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이점을 누리게 된다. 즉 수출자율규제는 관세 및 수입할당 등의 여타의 정책수단에 비하여, ①협정을 통해 최대수출량을 설정함으로써 수입억제효과 극대화 ②정책의 채택이나 운용상의 편의성 ③무역상대국의 보복적 조치나 세계적 여론 비난 회피 ④국내이익집단간의 정치적 저항 회피 ⑤차별적 정책수단으로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입국내 섬유류제품의 가격상승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수량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면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국내가격이 상승한다. 이러한 가격상승은 생산측면과 소비측면에서 자중손실(dead weight loss)을 발생시켜 소비자잉여가 사라진다. 한편 인위적인 수량제한이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이에따라 얻게 되는 이득을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라 한다. 그러므로 수입국의 국내가격과 국제시장가격 간의 격차는 일종의 경제적 지대가 된다. VER의 경우 수출국이 쿼터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그 경제적 지대가 전부 수출국의 생산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MFA규제는 주로 개도국이 많이 수출하는 저가섬유제품에 적용되므로 국내가격 상승은 결국 저가 제품에서 집중되므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함으로써 국내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는 효과도 가진다.

넷째 수입수량규제에 의한 가격상승은 수입국내 경쟁력 없는 기업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수입수량규제에 대응하여 개도국의 수출품이 고급화·고가화함으로써 선진국의 생산자가 오히려 저급품을 생산하게 되어 결국 선진국의 섬유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장기적으로 무역흐름을 왜곡하고, 무역마찰을 심화시키고, 국내물가의 상승을 통해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갖게 되었다.

다섯째 MFA에 의한 섬유류수입규제는 효율적 생산자와 수출개도국에만 적용되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생산자인 선진국 및 특혜수출국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수출개도국의 시장점유율이 그러한 비규제수출국에 의하여 잠식당하는 무역전화효과가 발생된다. 그 결과 수입국측이 당초 의도했던 섬유류총수입의 규제를 실현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가 있는 개도국의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 논의를 전제로 섬유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영국의 개도국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인 <표 3-5>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수입규제의 형태를 관세, 수출자율규제, 수입수량규제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다. VER의 경우 소득효과나 고용효과가 다른 형태의 수입규제에 비하여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보다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5> 개도국섬유류에 대한 영국의 수입규제 효과(1990년기준)

(단위 : %)

제 효과	관 세	관 세 (국내가격인상시)	수출자율규제	수입수량규제
실질가처분소득	-	-0.7	-0.7	-1.6
실질GDP	-0.4	-0.9	-0.2	-2.5
소비자물가지수	0.3	1.9	1.5	1.4
고용(섬유부문)	+100	-34	+125	+78
고용(나머지 전체)	-7.0	-7.8	-10	-274

자료 : 문대영·김기홍(1985) p.43

3. 세계무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

이상과 같은 수출국과 수입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통하여 MFA는 세계섬유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개도국의 대선진국 섬유수출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섬유수출의 둔화는 대선진국 섬유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세계무역의 축소균형화가 진행되었다. 세계섬유산업의 비교우위 구조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왜곡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산업의 국제경쟁이 보다 격화되게 되었다. 제통합체의 역내무역이 증가되거나 피규제국가로부터 비규제국가로의 무역전환이 이루어졌다. 선진국의 잠정적인 수입규제조치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선진국의 사양산업이 그대로 지탱되어 오히려 선후진국간의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결국, 무역질서의 확립·선진국의 산업구조조정·점진적 자율화를 통해 세계섬유무역의 증대를 이룩하려는 MFA는 본래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MFA가 가져다 준 현실적 결과를 살펴보자. 첫째 개도국의 수출이 MFA에 의해 제한되었는가, 둘째 MFA에 의해 규제받는 국가로부터 규제받지 않는 국가로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도국의 섬유류수출이 MFA에 의해 제한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섬유류교역의 그룹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3-6>에서 보듯이 세계전체의 수출 중 선진국의 비중을 살펴보면, 1955년 79%에서 1988년 47.5%로 낮아진 반면 개도국의 비중은 15%에서 39.5%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세계전체의 수입 비중은 70년대 이전까지는 선진국이 급격히 증대되고 개도국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70년대 이후 선진국 70%수준, 개도국 20%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3-7>에서 보듯이 70년대 이후 섬유무역의 그룹간의 관계를 보면, 선진국의 수입 중 선진국 비중은 감소한 반면(81.0%→57.2%) 개도국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15.9%→35.1%). 개도국의 전체수입 중 선진국 비중은 크게 떨어진 반면(66.9%→33.5%) 개도국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22.8%→41.3%).

<표 3-6> 세계전체섬유류무역 중 그룹별 비중

(단위 : %)

		1955	1963	1970	1973	1980	1982	1986	1988
수출	선진국	79	74	74	70	62	60	54.8	47.5
	개도국	15	18	17	22	28	30	33.7	39.5
	공산권	6	8	9	8	10	10	11.6	13.0
수입	선진국	52	63	72	68	68	57	73.8	72.8
	개도국	43	30	19	25	22	34	17.8	19.8
	공산권	5	7	9	7	8	9	8.4	7.4

자료 : GATT, *International Trade*, 1984, 1991

<표 3-7> 섬유류무역 중 그룹간 무역비중

(단위 : %)

연도	수입국 수출국	선진국	개도국	공산권	세 계	선진국	개도국	공산권	세 계	연도
		1970	선진국	81.0	66.9	33.5	74.1	67.2	49.9	
개도국	15.9	22.8	13.8	17.1	36.2	35.5	14.7	27.8		
공산권	3.0	9.7	52.1	8.8	5.5	11.8	44.0	10.0		
세 계	71.5	19.4	9.0	100	68.0	21.7	7.8	100		
1986	선진국	61.0	42.6	25.8	54.8	57.2	33.5	22.2	47.5	1988
개도국	31.1	41.5	29.9	33.7	35.1	41.3	39.3	39.5		
공산권	6.9	15.7	43.3	11.6	7.8	25.8	40.0	13.0		
세 계	73.8	17.8	8.4	100	72.8	19.8	7.4	100		

자료 : GATT, *International Trade*, 각년도

<표 3-8> 개도국의 대선진국 섬유수출추이

(단위 : 연평균증가율%)

	1963~76	1976~78	1978~84	1984~87	1987~89
직 물	7.2	4.6	3.7	11.2	7.4
의 류	20.9	4.8	10.9	8.2	12.7
합 계	14.1	4.8	9.0	8.8	11.0

자료 : GATT, *International Trade*, 각년도

<표 3-8>에서 보듯이 개도국의 대선진국 섬유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MFA(II)의 합리적 이탈조항에 의해 개도국의 수출증가율이 1976-1978년 기간 동안 연평균 4.8%로 대폭 하락하였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비록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MFA가 허용하고 있는 최저연평균증가율 6%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표 3-9>에서 보듯이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점유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시장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제조품의 시장점유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섬유류분야의 시장점유가 보다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세계섬유무역이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개도국섬유류의 선진국 시장침투가 급속히 이루어져, 섬유무역의 세계중심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전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도국의 대개도국수출도 급속히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FA규제가 개도국의 섬유수출을 억제하였다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일견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도국의 수출증가율이 높았고 또한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만일 MFA규제가 없는 자유무역이 이루어졌다면 개도국의 수출증가율과 시장

점유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더욱이 섬유산업이 지니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관련하여 볼 때 만약 선진국의 MFA규제가 없었다면 선진국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 더욱 급속히 진전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개도국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증가했을 것이다. 즉 선진국의 MFA를 통한 규제는 그 만큼 선진국 산업의 구조조정을 느리게 하여 자체 섬유산업을 보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9> 개도국의 섬유류수출에 대한 규제와 쿼터 소진율

(단위 : %)

수입국	연도	수입 중 개도국비중	규제하의 수입비중	실효규제 수입비중 ⁽¹⁾	평균쿼터 소진율
EC	1981	56.5	40.3	20.8	68.3
	1987	67.1	36.2	21.9	82.1
	평균	59.7	37.8	20.2	71.4
미국	1981	77.6	33.2	39.2	67.3
	1987	78.6	57.7	53.8	82.8
	평균	77.5	54.5	43.8	75.5
캐나다	1981	35.3	54.5	19.1	73.5
	1987	49.9	54.2	37.1	84.7
	평균	43.3	51.8	39.4	86.1
스웨덴	1981	24.2	53.1	24.6	82.2
	1987	26.4	49.9	43.9	97.9
	평균	24.5	55.7	36.1	88.2
전체	1981	60.	46.3	28.6	68.4
	1987	69.2	47.6	38.4	82.9
	평균	64.6	47.1	33.1	74.8

자료 : 김정수·한진규(1990) p.85

주 : (1) 실효규제수입비중은 쿼터소진율이 90%이상인 품목이 전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중 차지하는 비율임

개도국의 경우 그동안 MFA규제를 회피하고 수출의 안정적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을 개척해왔다. 예컨대 규제가 없는 비규제품목으로의

품목을 전환하고 품질을 고급화(upgrading)하였다. 또한 규제국으로부터 비규제국으로의 수출선을 전환하고, MFA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우회수출 등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개도국의 대선진국 섬유수출이 급속히 증대되어 MFA의 규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요인이 내포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동안 MFA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섬유수출이 신장되고 있는 것은 쿼터관리상의 융통성(flexibility)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최근 MFA의 융통성이 상당히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전용이나 이월 등의 융통성이 쿼터활용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표 3-9>는 주요 MFA활용국에 대한 개도국의 쿼터소진율 등을 보여주고 있다. 쿼터 소진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80%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경우 쿼터 소진율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은 MFA의 규제효과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거나 실효규제수입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는 것은 MFA의 규제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MFA의 규제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보다 섬유쿼터를 국가별로 배분하는 MFA의 쿼터관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EC내의 섬유수요분포와는 무관하게 과거수입실적에 따라 국별쿼터를 배분하는데, 이러한 경우 섬유수요의 변동에 따라 특정섬유류에 대한 쿼터소진율은 자주 미달되었다. 또한 어떤 원인으로 공급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쿼터소진이 억제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쿼터소진율이 낮다는 것이 반드시 MFA의 규제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게 한다.

이상의 논의는 MFA의 경제적 효과를 개도국그룹과 선진국그룹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MFA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MFA의 규제 또는 피규제 정도 여하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의 상황을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섬유수출개도국을 고규제를 받는 고규제수출국(high restrictive country)과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를 받는 저규제수출국(low restrictive country)으로 구분해 보면, 80년대의 경우 한국, 홍콩, 대만의 이른바 빅 3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전자에 속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의 남미국가 및 인도, 파키스탄, 중국, 유고 등이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섬유수출입의 상황을 살펴보면 MFA가 수입규제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왔음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표 3-10> 실효쿼터품목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변화(1981~87년)

수입국	수출국 분류	시 장 점 유 율 (%)		
		1981(A)	1987(B)	비율(B/A)
EC	수출개도국 전체	84.72	86.66	1.02
	(1) 피규제개도국 전체	83.78	85.37	1.02
	3대 고규제개도국	55.11	43.45	0.79
	여타피규제개도국(32국)	28.67	41.92	1.49
	(2) 비규제개도국 전체	0.94	1.29	1.38
	CBI국가(특혜받는 국가) ⁽¹⁾	3.59	6.01	1.67
	선진국 전체	14.54	12.77	0.88
	미국	수출개도국 전체	31.00	35.02
(1) 피규제개도국 전체		25.73	25.88	1.01
3대 고규제개도국		13.07	10.48	0.80
여타피규제개도국(20국)		12.66	15.40	1.22
(2) 규제없는 기타개도국		4.74	8.33	1.76
ACP국가(피특혜국가) ⁽²⁾		0.52	0.81	1.56
선진국 전체		64.67	61.51	0.95
EC 역내국 ⁽³⁾		52.33	49.60	0.95

주 : (1) Caraibbean Basin Initiative 국가 (2) Lome협정의혜 무관세 혜택받는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국가들 (3) EC는 10개국 기준이며 스페인·포르투갈 제외

자료 : R. Erzan *et als*(1989) 및 김정수·한진규(1990.3) p.90~91

먼저 <표 3-10>은 1981년 이후 87년까지의 EC와 미국에 있어 실효쿼터품목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 점유율의 증가가 큰 것은 피특혜국가→비규제개도국 또는 저규제개도국→고규제개도국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홍콩·대만과 같은 3대 고 규제국(BIG 3)의 경우 시장점유

율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저하의 정도는 선진국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표 3-11> 은 1975년 이후 87년까지 개도국 및 NICs 대선진국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도 개도국 전체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공업국(NICs)²⁴⁾의 시장점유율의 증가율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수출경쟁력이 후발국들에 의해 추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높은 쿼터규제에 의한 무역전환효과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표 3-11> 개도국 및 NICs의 선진국 시장점유율의 증가율 추이(1975~87)

수출국	수출 대상 국가						
	미국	일본	프랑스	서독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세계)							
섬유제품	0.70	1.59	22.00	5.02	1.41	4.33	1.07
의류제품	9.51	5.78	9.03	6.29	3.76	10.31	4.79
(개도국)							
섬유제품	6.75	1.50	26.40	8.09	6.17	5.45	1.88
의류제품	11.00	6.26	13.70	0.74	7.85	28.93	3.04
(신흥공업국)							
섬유제품	0.27	-1.95	26.41	5.16	5.05	-0.91	1.51
의류제품	9.21	4.79	15.14	8.47	1.02	16.25	0.90

자료 : The World Bank(1990)

<표 3-12>는 1973년 이후 86년까지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선진국수출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 중 EFTA국가들의 경우 개도국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을 선진국이 잠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최소적정생산(minimum viable production)을 고수하기 위하여 MFA를 통한 개도국으로 부터 수입을 강력히 규제하였던 노르웨이·스웨덴의 경

24) 1960년대부터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주었던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을 말한다.

우 특히 그러하였다. 여타의 EFTA국가들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선진국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특기할 것은 MFA규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강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과 스위스처럼 MFA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선진국에 의한 시장점유율이 별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과 대조되고 있다.

<표 3-12> 석유류교역의 선진국간 교역의 비중

(단위 : %)

	직 물 류				의 류			
	1973	1977	1982	1986	1973	1977	1982	1986
EC ⁽¹⁾	38.9	37.1	44.2	45.2	14.4	13.0	12.7	10.5
미국	66.7	56.8	50.1	47.8	26.7	16.2	8.9	13.1
일본	41.5	47.2	36.5	36.3	17.1	21.8	21.6	16.4
캐나다	83.2	82.9	80.3	72.1	43.1	34.0	23.3	26.0
호주	90.2	87.6	88.9	88.4	82.6	79.8	83.4	85.6
핀란드	80.6	83.8	87.0	88.5	62.6	59.4	68.0	73.3
노르웨이	n.a	n.a	88.8	89.8	n.a	n.a	86.5	86.2
스웨덴	75.1	73.9	83.2	84.7	60.0	58.5	67.3	70.8
스위스	83.6	85.6	83.9	85.7	84.3	77.9	79.6	80.5

자료 : 김정수·한진규(1990.3) p.83

주 : (1) EC역내교역은 제외되어 있음

MFA에 의한 석유류수입규제는 수출개도국에게만 적용되고 선진국, 비규제 또는 특혜개도국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수출개도국의 시장점유율이 그들에게 잠식당하는 이른바 무역전환효과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전환효과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수출개도국의 공급을 제한하고 비교열위국에게 공급을 담당케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출국에 대한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국제경쟁의 격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몇몇의 실증적 분석 결과는 기존의 수출개도국

으로부터 후발개도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는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아 여타개도국이 누리는 혜택도 별로 크지 못한 채 오히려 선진규제국의 국내공급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결과만 가져왔음을 밝히고 있다.²⁵⁾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의 MFA운용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어떤 새로운 개도국의 수출확대가 현저할 경우 그러한 국가에 대한 MFA규제강화가 곧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MFA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한 것이 <표 3-13>이다.



25) 김미아, MFA 폐지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유럽연구』 제27권 1호, 2009, pp143-165

<표 3-13> MFA의 경제적 영향

수출개도국	<p>(수출개도국일반의 부정적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력 있는 제품으 수출제한 생산활동의 불안정으로 인한 교란 섬유산업에 대한 투자위축 막대한 쿼터관리비용소요 이상의 제효과 통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p>(후발수출개도국의 부정적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FA에 의한 기득권 보호로 인해 국민적 필요와 잠재력에 상응하는 공업화 및 섬유수출기회 박탈 우려 정부 및 수출업체의 개발의지 좌절 우려 	<p>(선발수출개도국의 긍정적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쿼터기득권에 의해 후발국의 추격을 견제하는 효과 쿼터의 사전배정으로 인한 섬유산업의 안정성 확보효과 물량규제회피하기 위한 제품의 고급화 다변화의 촉진효과 쿼터배정우회를 위한 시장다변화·생산 입지이전의 촉진효과 MFA가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선진국의 회색규제조치의 회피효과
수입선진국	<p>(부정적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쿼터로 인한 경제적 지대가 수출국의 생산자에 귀속됨 개도국이 수출하는 저가품에 대한 국내가격상승으로 국내소득분배 악화 사양산업으로서의 섬유산업구조조정 지역 및 이로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규제수출국으로부터의 비규제 수출국으로의 무역전환효과 이상의 제효과 통한 후생의 감소 	<p>(긍정적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효과 통한 보호효과, 고용효과, 소득효과 및 국제수지효과 등 정책수단으로서의 수출자율화규제 방식이 갖는 이점 활용효과 <p>(정책운용상의 편의성, 보복조치의 회피, 국내이익 집단간의 정치적 저항회피, 차별적 정책수단화의 이점 등)</p>
세계교역	<p>(부정적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류 교역에 대한 MFA규제로 세계 섬유류 교역의 축소균형화 세계적 비교우위구조의 왜곡 및 이로인한 국제경쟁의 격화 피규제국으로부터 비규제국으로의 무역전환효과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적정한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이상의 제효과 통한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 및 후생감소효과 	

자료 : 신현중·노택환(1992) p421

제4절 MFA 한국 섬유산업에 미친 영향

1. 수출입 패턴 영향

MFA 1·2기에는 수입제한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였고 성장률 관리에 있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 섬유 및 의류 수출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았다. <표 3-14>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섬유 및 의류의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MFA 1기에 섬유부문은 시작년도인 1974년에 생산지수로 103에서 종료년도 1977년에는 186으로 80%, 의류부문은 동 기간 중 131에서 265로 1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3-14> MFA 1·2기 섬유·의류 국내 생산 동향

(1973=100)

구분	MFA 1기				MFA 2기								
	'74	'75	'76	'77	'78	'79	'80					'81	
								Q1	Q2	Q3	Q4	Q1	Q2
생산	129	154	203	245	303	340	333	334	330	329	340	396	366
섬유	103	131	172	186	213	238	262	259	257	257	280	278	284
의류	131	168	238	265	330	319	325	282	330	334	352	395	399

자료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18.5 NOV.,1981, p.9

이와 같은 생산에 힘입어 <표 3-15>에서 보듯이 MFA 1기에는 섬유수출은 3억6천만달러에서 8억5천4백만달러로 137%, MFA 2기에는 12억4천5백만달러에서 19억3천만달러로 55%의 신장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의 증가는 미미하여 섬유의 국제수지는 MFA 1기 초반의 6천7백만불 흑자에서 15억3천9백만달러로 흑자로 22배 성장을 하였다. <표 3-16>에서 보듯이 의류 역시 섬유와 마찬가지로 MFA 1·2기를 통틀어 볼 때, 수출은 1973년 7억1천3백만불에서

1980년 25억1천1백만달러로 섬유 수출 증가율 보다 높은 25배의 기록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이에 반해 수입액은 1천만불을 전후하는 수준으로 의류분야의 국제수지는 섬유 수출증가율과 같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3-15> MFA 1·2기 섬유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섬유					
	MFA 1기			MFA 2기		
	1973	1976	1977	1978	1979	1980
수출	360	690	854	1,245	1,511	1,930
수입	293	323	339	388	425	391
수지	67	366	514	856	1,086	1,539

자료 : GATT, op. cit, p.15

<표 3-16> MFA 1·2기 의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의류					
	MFA 1기			MFA 2기		
	1973	1976	1977	1978	1979	1980
수출	713	1,632	1,756	2,165	2,397	2,511
수입	11	9	8	11	15	11
수지	702	1,623	1,748	2,153	2,382	2,500

자료 : GATT, op. cit, p.15

동 시기의 한국산 섬유 대 선진국 수출 동향을 <표 3-17>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EC는 1.15%에서 2.72%, 미국은 1.51%에서 5.79%, 일본은 14.56%에서 21.56%, 캐나다는 1.13%에서 3.21%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북유럽국가들로의 수출 증가율 추이는 비슷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높지 않았다.

<표 3-17> MFA 1·2기 국가별 한국산 섬유 對선진국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

국가	섬유						
	MFA 1기			MFA 2기			
	1973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EC	2,633	4,063	4,599	5,606	7,597	8,401	6,605
	30	89	122	135	157	179	179
	1.15	2.21	2.67	2.42	2.07	2.14	2.72
미국	1,306	1,444	1,557	1,970	1,943	2,140	2,655
	19	45	41	54	57	108	153
	1.51	3.18	2.67	2.75	2.94	5.07	5.79
일본	1,052	568	574	1,058	1,498	1,235	1,280
	153	103	120	312	394	280	276
	14.56	18.21	20.92	29.55	26.34	22.74	21.56
캐나다	769	1,017	986	1,047	1,331	1,252	1,382
	8	13	17	19	23	33	44
	1.13	1.31	1.73	1.86	1.77	2.67	3.21
오스 트리아	470	614	697	799	997	1,124	951
	-	2	2	1	4	5	4
	0.13	0.33	0.40	0.22	0.42	0.49	0.45
핀란드	256	333	338	365	524	603	524
	-	2	2	3	7	10	9
	0.16	0.87	0.63	0.83	1.49	1.69	1.9
스웨덴	493	689	663	688	864	924	734
	2	10	8	7	9	9	7
	0.51	1.53	1.32	1.16	1.06	1.01	1.01
스위스	502	523	610	789	974	1,102	917
	-	-	-	-	1	1	3
	0.03	0.12	0.13	0.12	0.12	0.11	0.35

자료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18.5 NOV., 1981, p.26~41

동 시기의 한국산 의류 對선진국 수출 동향을 <표 3-18>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점유율이 EC는 4.6%에서 10.01%, 미국은 11.65%에서 15.88%, 캐나다는 12.85%에서 16.96%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럽국가의 점유율도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40.82%에서 36.43%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특히, MFA 2기에는 오일쇼크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은 MFA의 수입쿼터 관리제

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표 3-18> MFA 1·2기 국가별 한국산 의류 對선진국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

국가	의류						
	MFN 1기			MFN 2기			
	1973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EC	2,212	4,459	4,999	5,964	8,078	9,609	8,455
	101	345	444	504	645	754	846
	4.60	7.74	8.89	8.46	7.99	7.86	10.01
미국	1,971	3,258	3,696	5,312	5,536	6,267	7,406
	229	547	550	766	779	926	1,176
	11.65	16.81	14.88	14.43	14.08	14.38	15.88
일본	546	713	768	1,060	1,539	1,322	1,493
	223	338	358	490	606	402	543
	40.82	47.37	46.65	46.20	39.36	30.46	36.43
캐나다	313	688	566	544	676	653	783
	40	127	103	99	108	90	132
	12.85	18.45	18.27	18.24	16.03	13.86	16.96
오스 트리아	177	370	483	570	732	852	695
	3	10	15	17	21	23	22
	1.90	2.92	3.23	3.07	2.87	2.72	3.2
핀란드	52	78	92	91	144	198	181
	3	11	11	9	13	20	2
	1.11	0.92	0.66	0.55	0.37	0.52	1.63
스웨덴	370	696	777	786	1,046	1,229	1,068
	13	30	38	36	37	54	55
	3.66	4.44	4.92	4.69	3.63	4.45	5.15
스위스	431	578	697	912	1,102	1,295	1,204
	1	7	10	11	9	8	15
	0.31	1.29	1.44	1.21	0.86	0.69	1.27

자료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18.5 NOV., 1981, p.26~41

MFA 3기에는 합리적 이탈 조항이 삭제되고, 부속서 A의 시장교란 조항이 적용되고, 높은 시장점유율 및 다 쿼터량 품목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선진국들의 수입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표 3-19>에서 보듯이 대 선진국 섬유 및 의류의 수출액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표 3-19> MFA 3기 섬유·의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섬유				의류			
	1981	1982	1983	1984	1981	1982	1983	1984
수출	2,194	1,999	2,220	2,377	3,309	3,189	3,048	3,712
수입	465	462	471	543	9	11	9	13
수지	1,728	1,537	1,748	1,835	3,300	3,178	3,039	3,699

자료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74.29 NOV.,1985, p.8

<표 3-20> MFA 3기 국가별 한국산 섬유 對선진국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

국가	섬유				의류			
	1982	1983	1984	1985	1982	1983	1984	1985
EC	6,276	6,228	6,320	6,614	8,005	7,667	8,089	8,245
	171	144	146	171	765	642	650	590
	2.73	2.32	2.32	2.59	9.56	8.38	8.04	7.16
미국	2,509	2,891	4,085	4,450	8,004	9,468	13,109	14,749
	173	234	296	311	1,212	1,418	1,852	1,944
	6.92	8.10	7.26	7.01	15.14	14.98	14.13	13.19
일본	1,311	1,181	1,610	1,614	1,517	1,245	1,596	1,721
	267	183	282	246	541	396	568	575
	20.39	15.54	17.52	15.26	35.71	31.85	35.64	33.46
캐나다	1,103	1,360	1,513	1,568	785	958	1,200	1,195
	33	45	57	79	151	169	202	187
	3.08	3.34	3.79	5.04	19.32	17.73	16.86	15.71
오스 트리아	907	873	852	863	700	741	777	802
	5	5	7	7	23	27	28	23
	0.64	0.59	0.9	0.87	3.3	3.73	3.64	2.95
핀란드	499	452	433	474	191	182	193	237
	17	17	15	12	3	3	2	2
	3.48	3.82	3.46	2.65	2.03	1.92	1.49	1.09
노르 웨이	348	314	323	347	616	566	596	674
	2	1	1	-	2	2	4	4
	0.63	0.51	0.37	0.27	0.35	0.19	0.22	0.60
스웨덴	676	634	660	694	1,002	880	919	1,062
	7	5	5	5	53	44	42	44
	1.06	0.80	0.85	0.84	5.36	5.03	4.63	4.19
스위스	855	840	862	901	1,221	1,236	1,287	1,316
	2	1	2	1	15	18	19	18
	0.29	0.23	0.26	0.21	1.30	1.46	1.53	1.37

자료: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74.29, NOV. 1985, pp.12~29.

동 시기에 한국산 섬유와 의류의 대 선진국 수출 동향을 <표 3-20>에서 살펴보면, 섬유의 경우 EC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던 시장점유율이 2.73%에서 2.59%로 소폭 감소하고, 미국의 경우 6.92%에서 7.01%로 소폭 상승, 일본의 경우 20.39%에서 15.26%로 크게 줄어들었다. 기타 유럽지역은 시장점유율이 비슷하거나 하락 추이를 보였다. 의류 역시 섬유와 비슷하게 시장점유율이 EC가 9.56%에서 7.16%, 미국은 15.14%에서 13.19%, 일본은 35.71%에서 33.46%로 하락하면서 선진국 수입 규제 영향을 직접 받았다.

MFA 마지막 단계인 4기에는 GATT 체제 복귀를 목표로 합의되고 쌍무협정 체결 시 개도국의 수출증대 측면에서 쌍무협정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섬유와 의류의 대 선진국 수출 점유율은 계속 낮아졌다. 섬유 분야는 하락세가 진정되는 분위기였으나, 의류분야는 EC가 7.91%에서 3.96%로, 미국은 12.49%에서 9.91%로, 일본은 39.85%에서 26.04%로, 캐나다는 15.71%에서 12.89%로 각각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표 3-21>에서 나타났다.

MFA 진행기별로 우리나라 섬유 수출 증가 추이를 <표 3-22>에서 종합하여 살펴보면, MFA 1기에는 섬유수출 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2기부터 4기까지 기간 동안에는 27.8%, 11.3%, 8.7%로 총 수출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80년대로 접어든 제4기에는 현격히 줄어들어 1982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MFA으로 인한 섬유류 선진국들의 수입 규제에 기인한다.

<표 3-21> MFA 4기 국가별 한국산 섬유 對선진국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

국가	섬유				의류			
	1987	1988	1989	1990	1987	1988	1989	1990
EC	10,282	11,043	11,239	13,863	15,327	17,549	18,629	24,832
	314	357	375	460	1,212	1,348	1,082	983
	3.05	3.24	3.33	3.32	7.91	7.68	5.81	3.96
미국	5,940	5,703	5,862	6,167	20,153	20,444	23,647	24,763
	431	448	443	482	2,517	2,485	2,772	2,453
	7.25	7.86	7.56	7.81	12.49	12.16	11.72	9.91
일본	2,513	3,578	3,948	3,719	3,946	5,768	7,501	7,372
	271	448	484	381	1,572	2,254	2,501	1,920
	10.77	12.51	12.26	10.24	39.85	39.08	33.35	26.04
캐나다	1,959	2,110	2,282	2,235	1,623	1,716	1,911	2,124
	146	152	159	134	255	264	274	274
	7.47	7.22	6.95	5.98	15.71	15.40	14.36	12.89
오스 트리아	1,429	1,470	1,494	1,896	1,534	1,563	1,601	2,197
	15	11	9	11	58	60	41	35
	1.05	0.75	0.63	0.56	3.77	3.86	2.59	1.65
핀란드	730	673	700	765	526	579	649	825
	12	11	10	11	10	13	9	8
	1.63	1.67	1.39	1.43	1.89	2.25	1.36	1.02
노르 웨이	549	513	449	526	1,147	1,053	955	1,149
	3	2	3	3	8	13	12	10
	0.51	0.47	0.64	0.58	0.66	1.21	1.30	0.87
스웨덴	1,066	1,104	1,071	1,219	1,835	1,899	1,891	2,305
	13	14	14	15	71	89	73	66
	1.24	1.23	1.34	1.19	3.85	4.69	3.84	2.88
스위스	1,428	1,522	1,542	1,837	2,421	2,536	2,547	3,162
	4	3	5	6	42	43	29	23
	0.29	0.23	0.32	0.31	1.72	1.70	1.14	0.74

자료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239.25 NOV. 1991, pp.19~37.

<표 3-22> MFA 기별 우리나라 섬유수출 증가 현황

구분	MFA발효전 (1970~73)	MFA 1기 (1974~77)	MFA 2기 (1978~81)	MFA 3기 (1982~84)	MFA4기 (1986~93)
총수출 연평균증가율	56.9	32.8	20.2	16.3	14.6
섬유수출 연평균증가율	58.3	27.8	11.3	8.7	8.1

자료 : MFA3기 까지, 조민형(1988) p74, MFA4기는 『통계로 보는 섬유산업』 섬유산업연합회(2012)

제4장 WTO협정과 섬유무역자유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주요 쟁점사항 중의 하나는 섬유무역을 규제하는 섬유수출국과 섬유수입간 수량제한협정인 MFA를 WTO 설립취지에 맞게 다자주의 틀 안에서 개편하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WTO협정 부속문서인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 and Clothing;ATC)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WTO섬유협정은 세계 섬유무역의 단계적 자유화기반을 마련하였다.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10년의 과도기간을 두고 수입물량규제 대상품목의 단계별 자유화를 거쳐 2005년부터 MFA의 완전철폐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장은 WTO협정에서 논의된 섬유무역 자유화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1절 WTO 섬유협정의 주요 내용

1. WTO 섬유협정의 개관

1962년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하는 면제품을 단기협정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미국, EU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OECD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무역을 규제하고, 1974년 이래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실시되어 온 MFA가 WTO섬유협정의 기본배경이 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섬유협상 타결로 1995년 발효된 WTO섬유협정은 GATT 체제에 위배되는 MFA의 섬유부문의 쿼타제도를 폐지하고 섬유무역을 WTO의 GATT체제로 복귀시켜 무차별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협정에는 섬유무역이 완전자유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으로 GATT 복귀는 10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것을 명기하고 있

다.²⁶⁾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WTO규정을 섬유제품에 대해 완전히 적용하기 위한 이행과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MFA하에 있던 쿼터는 WTO 섬유협정으로 이양되고 EU,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보유한 1,300여개의 개별쿼터는 지속된다. 협정에 의하면 WTO섬유협정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은 2004년 12월31일까지 모든 쿼터를 철폐하여야 한다. 또한 이 협정의 철폐시한을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의 발효일인 1995년 1월1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쿼터를 설정할 수 없다.²⁷⁾

1995년 1월1일부터 MFA하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모든 쿼터는 WTO내의 섬유감시기구(TMB)에 통보된다. 이러한 쿼터는 향후 10년 간 3단계로 나누어 이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였다.

제1단계는 1995년 1월1일부터 섬유수입국들은 섬유쿼터를 적용해온 대상을 1990년 기준 국별 총수입실적의 16%에 해당하는 품목을 GATT에 복귀시킨다. 제2단계는 1998년 1월1일에 17%를 추가적으로 복귀시킨다. 제3단계는 18%, 나머지 49%는 2004년 12월31일까지 GATT로 완전히 복귀된다. 제3단계에서 미국, EU 등 주요 섬유수입국에 의하여 쿼터가 해제되는 품목들은, 모자, 스카프, 숄, 장갑, 직조의, 셔츠 등 수출비중이 나거나 쿼터소진율이 낮은 품목들이다. 특별히 재생장섬유직물, 재생단섬유직물의 경우 EU 등에 상당량이 수출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품목이다. 통합제품 목록은 2000년 12월31일까지 WTO에 제출되고 2000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합과정 및 적용과정이 공개된다. 최종 단계에서는 잔존하는 모든 제품의 통합, 쌍방쿼터의 제거 그리고 협정 자체의 종료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 WTO섬유협정은 전문과 총 9조로 구성되어 있다. MFA에서 적용되는 572개 품목에 새로운 233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27) 전문 및 제2조 8항, 제9조, 제2조 4항

<표 4-1> 섬유에 대한 GATT통합률

단계	통합률 (근거:ATC부록의 목록에 있는 생산품의 1990년 수입량)	잔여 쿼터의 성장률 (근거:이전에 합의된 MFA쿼터성장률)
1단계(1995.1.1)	16%	16%(초기보다 높은 성장률)
2단계(1998.1.1)	17%(전체 33%)	25%
3단계(2002.1.1)	18%(전체 51%)	27%
4단계(2005.1.1)	49%(전체 100%)	

자료 : 권상장 · 임홍식(2001), p62

<표 4-2> 쿼터자유화 과정

연도	쿼터성장률	단위
1994	2.00%	1,000 MFA quota
1995	2.32%	1,023
1996	2.32%	1,047
1997	2.32%	1,071
1998	2.90%	1,102
1999	2.90%	1,134
2000	2.90%	1,167
2001	2.90%	1,201
2002	3.68%	1,345
2003	3.68%	1,291
2004	3.68%	1,338

자료 : 권상장 · 임홍식(2001), p62

주 : 표 상에 나타나는 수치는 10년 동안 통상적인(규칙적) 2%의 성장이 이루어져 22%의 상승이 있게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334%의 쿼터성장이 있게 됨

점진적인 쿼터철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정기간 중 통합되지 않고 있는 잔여 쿼터분량에 대해서는 그 쿼터량을 매 단계마다 증가시킨다.²⁸⁾ 협정이행기간 중 섬유수입국들은 국내산업구조의 경쟁강화를 위한 자율구조조정을 유도한

28) 제12조 13항, 14항

다.²⁹⁾ 예외적으로 협정이행 기간 중 급격한 쿼터제도 축소로 인해 수입국들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경우에 수입국은 GATT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섬유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섬유수입국들은 우회덤핑이 있을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섬유협정을 각국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감시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섬유감시기구(TMB)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WTO 섬유협정 내용

2. 1. 섬유무역의 GATT복귀 방법

섬유무역의 자유화의 두 가지 방법, 즉 GATT체제로 복귀하는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과 GATT체제로 미복귀된 품목의 수입량을 증대하는 방법에 의해 동시에 진행된다.

먼저 GATT통합품목의 점진적 확대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WTO섬유협정에서는 MFA에 의해 규제하고 있는 섬유품목을 잠정기간 1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GATT로 복귀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10년 간의 경과기간 동안 3단계에 걸쳐서 1990년 총수입량을 기준으로 최소한 5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GATT로 복귀시키고 경과기간이 끝나는 2005년 1월1일에는 협정적용 대상이 된 모든 섬유 및 의류 품목에 대한 수량규제조치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³⁰⁾

29) 제1조 5항

30) 협정적용 대상품목은 섬유의류의 중요 4가지 품목 즉 섬유사, 직물, 완성된 섬유제품과 의류 등으로서 섬유관련 전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정적용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기존 MFA의 규제품목 전부(571개 품목)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비MFA적용대상품목 224개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GATT복귀대상이 되는 품목은 795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단계로 WTO가 출범한 1995년 1월1일을 기해 섬유수입국들은 그간 섬유쿼터를 적용해오던 품목을 대상으로 1990년도 기준 총수입량의 16%에 해당되는 품목을 GATT에 복귀시키고, 2단계로 1998년 1월1일을 기해 1990년도 기준 총수입량의 17%에 해당되는 품목을 GATT에 복귀시키며, 제3단계로 2002년 1월1일을 기해 1990년도 기준 총수입량의 18%에 해당되는 품목을 복귀시키고 나머지 49%는 2005년 1월1일을 기해 GATT로 복귀시킨다는 것이다.

복귀품목 선정은 총수입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입국에서 선정권한을 가지게 된다. 복귀품목은 섬유사, 직물, 섬유제품과 의류 4개 그룹 각각에서 1990년도 총수입량을 기준으로 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반드시 4개 그룹 각각에서 골고루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무는 없고 복귀품목 전체적으로 각 단계별 복귀품목비율을 충족시키면 된다. 예를 들면 1단계의 경우 협정 적용 대상품목 중 최소 16%를 복귀시켜야 하는데 품목그룹별로 복귀비율의 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복귀품목 전체적으로 16%이상이 GATT에 복귀되면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각 회원국의 단계별 복귀조치는 복귀계획의 발효 12개월 전에 섬유무역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dy: TMB)에 통고되어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한편 GATT에 복귀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은 차별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

WTO섬유협정은 잠정기간 중 GATT의 자유무역 품목으로 전환되지 않은 미복귀품목에 대해서도 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 품목의 수입물량의 허용한도를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경과기간 중 GATT에 복귀되지 않고 수입수량규제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은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매년 수입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WTO협정에서는 GATT 미복귀품목에 대해서는 잠정기간동안 3단계에 걸쳐 각 단계별로 쿼터량을 점진적으로 매년 증가시키도록 함으로써 수입규제의 효과를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하였다(1단계 추가증가율은 매년 16%, 2단계 25%, 3단계 27%).

이와 같이 WTO섬유 및 의류협정에서 잠정기간 중 GATT 미복귀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섬유 수입국들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계속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품목의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이에 따라 수출국의 수입국 시장접근기회를 확대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 규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할 때 쿼터량에 묶여 수출에 제약을 받는 수출개도국들이 강하게 주장한 분야이다.

그러나 이 규정의 도입에 따른 수출기회의 확대효과는 수출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 수출국별로 적용받는 쿼터증가율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쿼터증가율(1%미만의 증가율)을 적용받는 한국 등 대량수출국들은 사실상 쿼터 증가율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수출기회의 확대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 반면에 비교적 높은 쿼터증가율을 적용받는 후발개도국들은 쿼터량을 급속히 늘려갈 수 있다.

2.2. 잠정 세이프가드 도입

WTO섬유협정 6조에서는 MFA가 GATT로 복귀되는 10년 간의 과도기간 동안 급격한 수입증가로 수입국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특정조건하에 수입국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잠정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원래 GATT협정의 일반 세이프가드(제19조) 발동은 아무런 수입제한을 받지 않는 상품을 대상으로 수입국이 수입의 급속한 증가로 자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동되는 경우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신중하고 공평하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TO섬유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정세이프가드는 과도기간 중 GATT로 복귀되지 않은 섬유품목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며 국가별로 선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GATT의 일반 세이프가드와 WTO섬유협정상의 잠정 세이프

가드의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하면 <표 4-3>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3> 일반세이프가드와 잠정세이프가드 비교

	일반세이프가드	잠정세이프가드
적용대상품목	-섬유류 모든 품목	-GATT의 미복귀 품목에 한함
발동범위	-무차별원칙(수량제한은 선별 적용 인정함)	-해당국가별 선택적 발동가능
발동요건	-해당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해당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규제형태	-관세인상 기본, 수량제한도 인정	-수량제한
발동기간	-연장포함 최대 8년 이내	-연장없이 최대 3년 이내 또는 GATT복귀시 까지
규제수준	-수준:최근 3년동안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을 감축할 수 없음	-협요청전 2개월부터 그 이전 12개월 간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을 감축할 수 없음

자료 : 김준형(외)(1994), pp 44-55참조

2.3. 섬유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dy;TMB) 설치

WTO섬유협정은 회원국들의 협정 이행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GATT상품무역이사회 산하에 섬유감시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TMB는 기존의 MFA하의 섬유감독기구의 대체기구로서 섬유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각국의 조치가 협정에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업무도 수행한다.

TMB는 회원국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치 및 절차와 관련된 통보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각국에 배포한다. 특히 회원국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조치국은 조치 후 5일 이내에 TMB에 통보함과 동시에 조치대상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³¹⁾ 회원국 간에 섬유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TMB는 WTO분쟁 해결절차를 거치기 전에 관련당사국들이 쌍무적 협의절차를 통해 자체적으로

31) WTO 섬유협정 6조 10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만약 관련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국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하고 있다.³²⁾ 회원국에서 권고나 판정요청을 할 경우 되도록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TMB는 권고나 판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당사국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TMB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권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된 사유를 검토하여 TMB는 즉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권고를 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TMB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동 사안에 회부하게 된다. 즉 섬유감시기구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이를 상정하여 해결하게 된다.

2.4. 약소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조치

MFN문제는 지난 세기동안 무역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별히 GATT는 MFN과 관련하여 상품무역 및 기타서비스에 조건없는 MFN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무역거래에서 이러한 규정의 약 25%정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섬유협정에 있어 소규모 섬유공급국과 후진개도국에 대하여 섬유수입국은 시장접근기회를 상당한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섬유수출국들에 의하면, 실제로 쿼터증가율은 여타 일반 수출국의 쿼터증가율보다 0.5%-3.5%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선진 수입국들은 소규모 공급국 및 후진 개도국에 대해 적절한 증가율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경우 EU시장은 쿼터제한이 철폐되어 무한정 수출할 수 있지만 미국, 캐나다 시장은 쿼터로 묶여 있어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2) WTO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관련 당사국은 분쟁해결 기구의 권고 및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TMB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즉 TMB의 분쟁해결절차는 관련국들이 WTO분쟁해결절차까지 가기 전에 양자 간에 원만한 사전합의를 이끌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류건우·김승민(2000)p34

또한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면화생산국들도 양자간 협의를 통해 특별우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출국과 수입국은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5 원산지 규정문제

섬유수출입국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 중 원산지규정의 개정문제가 있다.³³⁾ 섬유협정에서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유지할 경우 각 회원국의 제도변경은 WTO 회원국들의 기존이익과 의무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이래 자국의 원산지 규정을 개정 시행 운영해오고 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물의 원산지는 그 직물이 직조되었거나 또는 그 직물이 염색되고 프린팅될 경우, 그 두 공정이 동시에 수행된 곳이 원산지로 정하여졌으나 개정된 미국의 원산지 규정은 염색 및 프린팅 공정에 상관없이 직물이 직조된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원산지규정을 적용할 경우 수입 처리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섬유수출국들은 이러한 미국의 원산지규정의 변경은 기존 섬유무역 질서를 무시한 조치로서 섬유협정의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및 필요한 보상의 실시 후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보상을 실시하였을 뿐 대부분 섬유수출국가와는 협의자체를 가지지고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조치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제2절 WTO섬유협정이후 세계 섬유무역

33) 제4조

MFA는 GATT체제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모순적인 협정이었다.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면서도 자국의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 대해 GATT체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섬유류협정(ATC)이 체결되면서 섬유류무역이 단계적으로 자유화가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섬유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표 4-4> 세계 섬유류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국가	1995	2005	2009	2010	2011
세계	310,672	480,571	526,746	602,951	706,009
중국	74,625 (24.0)	158,263 (32.9)	200,215 (38.0)	242,271 (40.2)	284,158 (40.2)
EU	-	156,090 (32.5)	161,366 (30.6)	168,216 (27.9)	192,996 (27.3)
인도	8,468(2.7)	17,070(3.6)	21,115(4.0)	24,063(4.0)	29,381(4.2)
터키	8,645(2.8)	18,909(3.9)	19,280(3.7)	21,724(3.6)	24,720(3.5)
방글라데시	2,401(0.8)	7,595(1.6)	13,410(2.5)	16,923(2.8)	21,529(3.0)
미국	14,023(4.5)	17,377(3.6)	14,094(2.7)	16,831(2.8)	19,003(2.7)
베트남	-	5,406(1.1)	10,548(2.0)	13,450(2.2)	16,926(2.4)
한국	17,270(5.6)	12,972(2.7)	10,552(2.0)	12,577(2.1)	14,208(2.0)
파키스탄	5,867(1.9)	10,691(2.2)	9,867(1.9)	11,778(2.0)	13,632(1.9)
인도네시아	6,090(2.0)	8,312(1.7)	9,123(1.7)	10,964(1.8)	12,836(1.8)
대만	15,106(4.9)	11,267(2.3)	8,795(1.7)	10,698(1.8)	12,010(1.7)
일본	6,946(2.2)	6,850(1.4)	6,727(1.3)	8,061(1.3)	8,633(1.2)
멕시코	7,708(2.5)	7,400(1.5)	6,593(1.3)	7,618(1.3)	8,631(1.2)

자료 : 섬유산업연합회(2012. 통계로 보는 섬유산업, p49)

<표 4-4>과 <표 4-5>는 ATC 개시년도인 1995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섬유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섬유자유화 시대로 회귀하는 1995년부터 한-EU FTA 발효 시기인 2011년까지 섬유류 수출이 1995년 172억 달러, 세계 시장점유율 5.4%에서 2011년 142억

달러, 세계 시장 점유율 2.0%로 수출 절대액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개도국들은 전반적으로 섬유의류 시장에서 세계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 먼저 당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1995년 746억 달러, 시장점유율 24%에서 2011년 2,841억달러, 시장 점유율 40.2%로 무려 2.8배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인도, 터키,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개도국 섬유의류 공급국은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표 4-5>는 세계 섬유의류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50억 달러, 시장점유율 1.6%에서 2011년 117억 달러, 시장점유율 1.6%로 수입절대액은 2배 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미국, 캐나다와 일본 등선진국이나 중국, 인도, 터키와 베트남 등 개도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입절대액은 증가했으나 시장점유율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

<표 4-5> 세계 섬유의류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국가	1995	2005	2009	2010	2011
세계	319,386	493,336	553,289	633,472	741,734
EU		203,701 (41.3)	228,669 (41.3)	240,604 (38.0)	273,067 (36.8)
미국	51,808 (16.2)	102,609 (20.8)	91,270 (16.5)	105,318 (16.6)	113,947 (15.4)
중국	42,183 (13.2)	51,065 (10.4)	42,673 (7.7)	48,473 (7.7)	51,637 (7.0)
일본	24,743(7.7)	28,352(5.7)	32,294(5.8)	34,063(5.4)	42,129(5.7)
캐나다	5,893(1.8)	10,278(2.1)	11,118(2.0)	12,464(2.0)	14,034(1.9)
한국	5,032(1.6)	6,454(1.3)	6,915(1.2)	9,275(1.5)	11,768(1.6)
러시아연방	1,369(0.4)	2,166(0.4)	6,417(1.2)	9,248(1.5)	11,328(1.5)
터키	1,860(0.6)	5,228(1.1)	6,866(1.2)	9,375(1.5)	10,829(1.5)
베트남		3,767(0.8)	5,800(1.0)	7,493(1.2)	9,207(1.2)
멕시코	3,680(1.2)	8,566(1.7)	6,308(1.1)	7,444(1.2)	8,603(1.2)

자료 : 섬유산업연합회(2012. 통계로 보는 섬유산업, p50)

주 : ()는 구성비율

이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섬유자유화 이후 세계 섬유무역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경쟁력이 있던 선진국시장에서는 MFA로 인한 보호장벽으로 제한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사이 개발도상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고 추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WTO 중심의 다자주의적 대외통상전략에서 FTA중심의 지역주의적 통상전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 활력을 위해 미국, EU 등 선진국과 동시에 ASEAN 등 개도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면서 섬유의류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5장 한-미 FTA와 섬유무역

제1절 한미 섬유산업 비교

1. 한국 섬유산업의 현황

한국의 섬유산업은 1960~80년대까지만 해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산업으로 한국경제를 선도하였다. 선진국들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의 빠른 시장점유율확대에 자국의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GATT 체제의 자유무역 흐름을 역행하는 MFA를 체결하였다. MFA를 통해서 선진국들은 일정기간 동안 쿼터를 통해서 섬유산업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섬유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다른 한편 섬유산업의 주요 소비국인 선진국으로부터 확보한 수입쿼터 범위 안에서 일정한 성장이 유지된 것도 사실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WTO의 다자주의 틀 안에서 10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었지만 ATC가 타결되면서 개도국에 대한 섬유 쿼터제한이 풀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무역의 보호장치인 MFA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동남아 등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개도국들에게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침체되었다. 이것은 <표 5-1>로 확인할 수 있다. WTO의 다자주의 틀에서 전면적인 섬유무역 자유화가 시작된 2005년 이후 한국의 섬유산업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종사자수, 인건비, 출하액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섬유산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 한국 섬유 산업 현황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수 (천명)	섬유제품	113	103	96	89	88	-6.0
	의복제조	90	87	87	79	79	-3.1
	화학섬유	6	5	5	5	4	-9.2
	계	210 (8.6)	196 (7.9)	190 (7.6)	174 (7.1)	172 (7.0)	-4.8
인건비 (십억원)	섬유제품	2,178	2,078	2,016	1,957	1,965	-2.5
	의복제조	1,526	1,546	1,599	1,562	1,345	-2.9
	화학섬유	204	188	196	194	150	-6.8
	계	3,908 (6.1)	3,812 (5.6)	3,811 (5.2)	3,713 (5.0)	3,738 (4.9)	-1.1
출하액 (십억원)	섬유제품	16,926	16,029	15,940	16,895	17,532	1.0
	의복제조	12,414	12,976	13,428	14,502	16,289	7.1
	화학섬유	3,854	3,514	3,845	3,934	3,781	-0.2
	계	33,195 (4.2)	32,519 (3.8)	33,212 (3.5)	35,330 (3.2)	37,602 (3.3)	3.2
부가 가치 (십억원)	섬유제품	6,674	6,052	5,751	6,094	6,228	-1.5
	의복제조	6,001	6,256	6,661	7,041	7,802	6.8
	화학섬유	1,280	776	871	1,035	1,002	-2.9
	계	13,955 (4.8)	13,084 (4.3)	13,282 (4.0)	14,170 (3.9)	15,031 (4.0)	2.0

자료 : 섬유산업연합회, 통계로 보는 섬유산업, 2011

주 : ()내의 숫자는 제조업대비 비중

<표 5-2>는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제조업 전체와 섬유산업의 출하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섬유산업의 전체 출하지수는 2007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09년까지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그 이후 2010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8년과 2009년의 하락세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지수보다 낮은 출하를 나타냈는데 섬유산업과 제조업을 단순 비교하였을 때 2005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는 75.7로 25%정도 그 격차가 발생하였다.

<표 5-2> 우리나라 생산자제품 출하지수³⁴⁾ 동향

연 도	'05	'06	'07	'08	'09	'10	'11
제조업	100	107.9	115.7	118.6	116.8	133.6	142.5
섬유산업	100	102.7 (95.1)	106.7 (92.2)	103.2 (87.0)	98.9 (84.6)	107.6 (80.5)	108.0 (75.7)
섬유	100	100.4	101.2	92.9	87.1	98.3	98.1
의복	100	110.2	119.5	123.4	119.5	124.8	126.6
화섬	100	88.4	89.5	85.1	86.0	94.2	92.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섬유산업연합회

주 : 2005=100, 괄호 내 숫자는 제조업 대비 섬유산업 비중(재구성)

섬유제품은 2007년도까지 상승하다가 잠시 하락 후 상승세에 있으며, 섬유제품을 이용한 2차 제품인 의류제조는 2008년도까지 상승하다가 국제금융위기로 2009년 주춤하다가 다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학섬유제조는 2006년도에 전년대비 11% 감소한 후 고전하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섬유산업에서 의류제조의 출하가 가장 활발하며 그 뒤를 섬유제조, 화섬제조 순으로 나타났다. 섬유원료 수출은 2000년부터 2009년 세계 금융위기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회복한 반면, 재료 및 의류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섬유원료의 수입은 2000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가 2011년도에 약 20% 증가하였다. 의류는 2000년 13억 달러에서 2011년 62억 달러로 약 3.7배 급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의류산업이 중국 및 동남아 등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의류 제조 공장들이 이동한 것에 기인한다. 섬유 분야의 무역수지는 2000년도 섬유원료 64억 달러, 섬유재료 26억 달러, 의류 37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으나, 2011년도 기준 섬유원료가 54억 달러로 18% 감소, 섬유재료

34) 출하지수(index of producer's shipment) : 생산된 제품의 출하단계에서의 변동 상태를 알기 쉽게 지수로 나타낸 것.

는 16억 달러로 62% 감소하였으며 의류는 39억 달러 적자를 보여 무려 206%나 감소하였다.

<표 5-3> 우리나라의 섬유군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수지	구분	2000	2002	2005	2007	2009	2011	증감율	
								전기	후기
수출	원료	10,076	8,623	8,222	8,442	7,475	10,756	-18	35
	재료	3,043	2,539	2,612	2,506	2,055	2,684	-14	4
	의류	5,036	4,156	2,865	2,301	1,887	2,294	-43	-8
	계	18,156	15,319	13,700	13,250	11,418	15,735	-25	21
수입	원료	3,635	3,419	3,319	3,636	3,043	5,350	-9	53
	재료	427	466	649	774	753	1,075	52	55
	의류	1,304	2,248	2,957	4,417	3,485	6,269	127	380
	계	5,367	6,134	6,927	8,828	7,238	12,695	29	59
무역수지	원료	6,441	5,204	4,903	4,806	4,432	5,406	-24	21
	재료	2,616	2,073	1,963	1,732	1,302	1,609	-25	-15
	의류	3,732	1,908	-92	-2,116	-1,598	-3,975	-102	204
	계	12,789	9,185	6,773	4,422	4,180	3,040	-47	-40

자료 : UN Comtrade, Country Trade Statistics, 저자 재구성

주 : HS(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 기준

- 원료(50류~55류, 60류), 재료(56류~59류), 의류(61류~63류)

2. 미국 섬유 산업의 현황

<표 5-4>에서 보듯이 미국 섬유업 종사자수는 2000년에 1백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09년 33만명 수준으로 제조업 전체 비중은 3%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인건비는 동 기간 동안 4.0%에서 1.9%로, 매출액은 3.5%에서 1.4%로 감소하였다. 또한 부가가치는 3.2%에서 1.4%로

50%이상 하락을 보이는 등 미국의 섬유산업은 섬유무역 자유화 이후 구조조정 되어야 할 사양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5-4> 미국 내 섬유 산업 현황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4	2006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수 (천명)	사, 식물	337	216	174	136	109	-11.8
	가정용섬유	231	166	146	135	112	-7.7
	의류	526	252	200	147	114	-15.6
	섬유계	1,094 (6.6)	634 (4.7)	520 (4.0)	418 (3.3)	335 (3.0)	-12.3
인건비 (백만 달러)	사, 식물	9,200	6,252	5,778	4,675	3,895	-9.1
	가정용섬유	5,441	4,705	4,407	4,114	3,426	-5.0
	의류	10,374	5,871	5,013	3,838	2,987	-12.9
	섬유계	25,015 (4.0)	16,828 (3.0)	15,198 (2.6)	12,627 (2.1)	10,308 (1.9)	-9.4
매출액 (백만 달러)	사, 식물	51,770	41,149	38,829	32,052	26,461	-7.2
	가정용섬유	33,880	33,637	32,264	26,836	21,261	-5.0
	의류	60,215	32,873	30,325	19,140	14,666	-14.5
	섬유계	145,865 (3.5)	107,659 (2.5)	101,418 (2.0)	78,028 (1.4)	62,388 (1.4)	-9.0
부가가치 (백만 달러)	사, 식물	21,429	17,560	17,140	12,532	11,386	-6.8
	가정용섬유	13,797	14,320	15,121	12,072	9,066	-4.6
	의류	28,210	16,621	15,968	9,068	6,937	-14.4
	섬유계	63,436 (3.2)	48,501 (2.4)	48,229 (2.1)	33,672 (1.5)	27,389 (1.4)	-8.9

자료 : 미국 섬유산업 동향(2012. 1., 섬유산업연합회, p.15)

주 : ()내의 숫자는 제조업대비 비중

산업의 출하규모는 그 산업의 성장이나 쇠퇴를 나타내는 주요지표이다. 미국 내 섬유산업의 출하규모는 <표 5-5>에서 2000년도 1,458억 달러에서 2009년

623억 달러로 연평균 11%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2009년 현재 약 1/2로 축소되었다.

<표 5-5> 미국 내 섬유제품 출하동향

(단위: 백만달러, %)

분류*		2000	2002	2005	2008	2009	'05-'09년 증가율
원사 직물 류	사류	11,433	10,630	10,368	8,573	6,376	-11.4
	직물	25,993	22,476	20,189	15,970	13,831	-9.0
	염색가공	14,344	12,391	10,786	7,509	6,254	-12.7
	소계	51,770	45,497	41,343	32,052	26,461	-10.6
섬유 제품	가정용	22,520	22,302	22,777	16,537	12,614	-13.3
	기타	11,360	9,780	10,514	16,537	12,614	-13.3
	소계	33,880	32,082	32,791	26,836	21,261	-10.3
의류	니트	7,604	5,957	4,040	2,525	2,016	-15.9
	봉제	48,021	33,065	16,679	15,355	11,477	-12.6
	기타	4,590	2,880	1,953	1,260	1,173	-12.0
	소계	60,215	41,902	25,672	19,140	14,666	-13.1
섬유총계		145,865	119,481	99,806	78,028	62,388	-11.1

자료 : 미국 섬유산업 동향(2012. 1., 섬유산업연합회, p.16)

주 : *NAICS(북미산업표준) 코드 기준

- 313 : 사, 직물류, 3131 : 사류, 3132 : 직물류, 3133: 염색/가공
- 314 : 섬유제품, 3141 : 커튼 등 가정용 섬유, 3149 : 기타 섬유제품
- 315 : 의류, 3151 : 니트, 3152 : 봉제, 3159 : 기타 의류 및 부속품

부문별로는 섬유사류, 염색가공, 가정용 섬유, 의류 등이 10%를 상회하는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의류부문의 대폭적인 축소이다. 이것은 WTO섬유협정 이후 지금까지 미국섬유산업의 보호막이었던 MFA가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즉 실질적인 섬유무역 자유화가 다자주의 측면에서 전개됨에 따라 중국,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가격우위로 미국 시장점유율을 확대함

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다. MFA가 없었다면 이미 이루어져야 할 구조조정이 이제야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수출액 추이를 <표 5-6>를 통해서 살펴보면, 섬유산업의 수출은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섬유원료부분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즉 2000년 수출액 8,049백만 달러에서 2011년 15,596백만 달러로 약 93% 성장하였다. 이것은 화학섬유사 등에서 새로운 원료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의류수출은 섬유무역의 자유화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0년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5-6> 미국의 섬유군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수지	구분*	2000	2002	2005	2007	2009	2011	증감율	
								전	후
수출	원료	8,049	7,641	9,636	10,276	8,096	15,596	19.7	50.6
	재료	3,904	3,909	4,855	5,057	4,348	5,739	24.3	11.0
	의류	10,036	8,422	7,422	6,707	5,895	7,390	-26	2.9
	계	21,990	19,325	21,915	22,041	18,341	28,725	-0.3	30.6
수입	원료	7,653	7,099	7,619	7,461	5,017	7,258	-0.4	-3.0
	재료	3,898	4,231	5,889	6,373	5,018	6,740	51.0	9.4
	의류	66,591	67,389	78,376	90,149	76,703	93,980	25.9	7.3
	계	78,142	78,720	91,090	103,984	86,739	107,978	24.6	6.7
무역수지	원료	396	542	2,017	2,815	3,079	8,338	408	190
	재료	6	△322	△1,034	△1,316	△670	△1,001	1600	13
	의류	△56,555	△58,967	△70,954	△83,442	△70,878	△86,590	35.2	7.7
	계	△56,152	△59,395	△69,175	△81,943	△68,398	△79,253	34.3	1.0

자료 : UN Comtrade, Country Trade Statistics, 재구성

주 : HS(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 기준

- 원료(50류~55류, 60류), 재료(56류~59류), 의류(61류~63류)

수입은 섬유원료 부문은 큰 변동없이 70억 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약간 감소추세이다. 이에 비해 섬유재료 및 의류는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특히 의류 부문은 2000년 665억 달러에서 2011년 940억 달러로 41.1%의 대폭적인 수입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노동집약적인 의류부문은 수입하고 기술집약적인 섬유원료 부문은 수출하는 방향으로 미국 섬유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섬유원료 및 의류부문의 무역수지를 분석하면, 섬유원료부문은 섬유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20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섬유원료부문에서 고부가가치의 섬유원료가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류분야는 중국,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자폭이 2000년 566억 달러에서 2011년 869억 달러로 53.1%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섬유무역의 자유화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있는 개도국의 의류제품이 미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과의 FTA 등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호정책을 실시하려는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섬유 및 의류부문의 적자 확대로 인해 자국 산업 보호 및 제3국 우회 수입에 대비한 검증이나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향을 삽입하려는 것이다.

제2절 한미 FTA 협정 체결 과정

1. 한미 FTA 추진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인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되었

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무역의존도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추세였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산을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 투자와 내수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이 증가해도 잠재성장률은 하락하였다. 대외적으로는 DDA협상의 중단과 FTA의 급속한 확대, 이라크 전 이후 유가급등 등 전반적으로 우리경제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³⁵⁾ 이러한 상황에서 첫째 중국이 제조업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따라 잡을 것이 필연적일 것이 때문에 기존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낙후된 서비스산업 특히 사업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기본방침이 나온다.³⁶⁾ 즉 한국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 감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산업, 기업, 노동과 소득 등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³⁷⁾

2005년 9월경 미행정부는 한국 등 4개국에 대하여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우리나라는 내부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검토에 착수하였다. 당시 전경련, 무역협회, 한국갤럽, 중소기업협회 등에 대해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70~80%대의 높은 찬성을 보였다.

2005년 말부터 2007년 4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2차례의 비공식 준비협의, 8차례의 공식협상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나, 1차 타결 내용 중

35) 강인수(2006), 한미FTA에 관한 소고, 경제경영논집 36집 2호, 숙명여대, p21

36) 전창환(2006), 한국FTA협상 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동향과 전망, 67, 한국사회과학연구소 p158

37) 여기서는 한국의 경제적 요인 중심으로 기술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안보·외교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경제적 입장에서 미국은 한국과 FTA체결해도 큰 이득은 없지만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 목적으로 한미FTA 추진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론자'적 외교정책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것을 경제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커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민감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거친 후 2010. 12. 3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에서 개최된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에서 추가협상이 타결되었다.

2. 한미 FTA 내용: 섬유분야

한미 FTA는 다른 FTA협정과 마찬가지로 크게 상품부문과 서비스부문 2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협정과는 달리 양국 간 민감한 산업분야인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을 두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협정문이 작성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섬유 및 의류 분야는 미국에서 매우 민감하게 취급하고 있는 산업이다.

2.1 섬유 및 의류 분야

한미 FTA는 섬유산업부문을 제4장에서 다루고 있다. 4장 1조에서는 양국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2조에서는 원산지규정 및 관련사안, 3조에서는 섬유와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4조에서는 섬유 및 의류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 5조에서는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부속서 4-가>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정의하고 원산지 상품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섬유 원재료인 ‘원단’과 ‘원사’에 대해 분명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4-나>에서는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섬유원료·원사·원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1.1 양허안 내용

2007년 한미 FTA 섬유·의류 분야에 대한 협상결과 미국 측 양허수준의 즉시철폐 비율은 수입액 기준으로 61%, 품목수로 87%에 이른다. 특히 스웨터(미

국 관세율 32%), 양말(미국 관세율 13.5%), 화섬 남성바지(미국 관세율 28.2%) 등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의 상당수가 즉시 철폐된다. 한미FTA가 발효 되면 산업연구원은 연평균 수출 2.3억 달러의 증가와 수입 1,900만 달러의 증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5-7>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현황

즉시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스웨터 - PE단섬유 - 남성합섬셔츠 - 면양말 - 합성모포 - 남성모직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면셔츠 - PEF 직물 - 화섬양말 - 면직물 - 화섬편물(염색) - 합섬편물블라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섬편물(탄성사함유) - PE 강력사 - PEF 직물(염색) - 남성면셔츠(편물) - 여성면바지(직물)

자료 : 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산업 FTA의 이해와 활용 자료집(2012.,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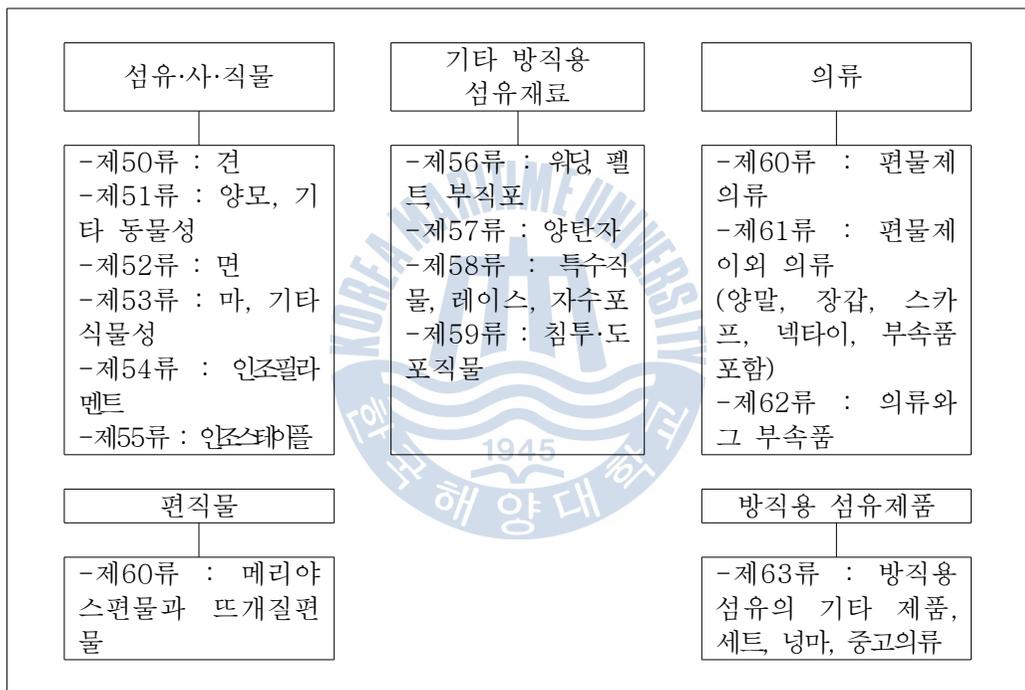
2.1.2 한미 FTA 관련 섬유 및 의류의 범위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의하면 “섬유 및 의류제품”이라 함은 관세율표상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에서 제63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섬유가 포함된 제4202호의 여행가방류(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류인 것에 한함), 제7109호의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과 제9404호의 침구류를 포함하고 있다.

제11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품목을 정리하면 <표5-8>에서처럼 구분할 수 있다. 제50류~제55류는 방직용 섬유 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공의 정도에 따라 각 단계의 물품을 섬유(纖維)(또는 원료), 섬유사(絲), 직물(織物)의 순서로 다시 분류한다. 제56류~제59류는 섬유 또는 의류의 원료

로 사용하는 것으로 양탄자, 특수직물, 침투·도포 직물 등이 포함된다. 편물(編物)로서 직물(織物)과 달리 편직기로 짠 천으로 위사와 경사가 없는 천(Fabric)으로 분류하는 제60류가 있다. 제60류는 과일편물, 폭, 고무사 함유, 위편직·경편직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데 제60류 4단위 호는 가공공정에 따라 분류되지는 아니한다. 의류와 각종 섬유제품이 종류에 따라 분류되는 제61류~제63류가 있다. 이들은 제품의 종류·재질에 따라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표 5-8> 제11부 방직용 섬유 및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자료 : 관세청, 주요 산업별 한미 FTA 활용매뉴얼, 2011

2.1.3 양자 긴급조치

양국은 섬유·의류 분야에 대하여 관세인하 또는 철폐 결과 상대국으로부터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은 섬유·의류 제품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으로 급증하여 동종 또는 직접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런 실제적 우려가 나타날 때 취할 수 있는 양자 긴급조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필요시 2년 연장 가능)로 존속기간을 관세 철폐 후 1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재발동을 금지하였다. 조치내용으로는 관세 감축을 정지하거나 MFN 실행관세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양자 긴급조치를 시행할 때 상대국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형태로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긴급조치 적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조치의 무역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진 관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협정에 따른 섬유긴급조치와 한미 FTA 제10장(무역구제) 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WTO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2.1.4 원산지규정 관련 사안

양국 중 어느 한 쪽 당사국 요청이 있을 때, 양 당사국의 영역내의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공급 가능성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특정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 개정여부를 검토 할 수 있는 협의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조정의 가능성을 열었다.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생산자가 섬유 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상업적인 물량을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생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원산지를 인정하는 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최소허용수준이나 세트의 취급 허용범위를 제시하여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을 포함하였다.

최소허용수준은 섬유 또는 의류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원산지규정상 적용 가능한 세 번 변경을 거치지 안했고,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했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³⁸⁾. 섬유 및 의류에 적용하는 원산지규정상 수입 상품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의 일반 해석 규칙 3’에 따라 ‘소매용 세트’를 구성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①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 ②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³⁹⁾

2.1.5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 협력

양 당사국 중 특히 미국은 섬유 분야 무역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산 섬유로 인한 자국내 섬유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이미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같은 기초를 보여왔다.

한미 FTA에서도 미국은 섬유 및 의류상품의 무역에 있어 양 당사국이 각자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지원하고, 원산지 신청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보장하며, 무역 거래시 발생하는 국제협정 이행조치 집행 및 우회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 가능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체약상대국인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되어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섬유 또는 의류상품의 생산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매년 갱신하도록 하는 반면 미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에서 한미FTA가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평등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표 5-9>에 보듯이 상당히 자세한 섬유산업의 정보가 미국측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

38) 한미 FTA 협정문의 일반물품에 대한 최소허용수준 10퍼센트에 비해 섬유·의류 분야는 엄격함.

39) 한미 FTA 협정문의 일반물품에 대한 허용범위 15퍼센트에 비해 섬유·의류 분야가 엄격함.

해 한국 섬유산업의 전반적인 영업형태가 미국측에 의해 알려짐으로써 미국의 섬유관련정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물론 미합중국으로 수출되지 아니하는 원료 및 제품을 수출하는 자의 정보나 부속서 4-가의 61류의 규칙 1 또는 62류의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감 재료로 사용된 원단 이외의 것으로 61류와 62류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지식경제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한국에 있는 대미 섬유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한 정보내역을 수집하였다. 201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매년 미국 측에 제공될 예정인데 앞으로 미국측의 검증이 예상된다.

<표 5-9> 우리나라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내역

- ① 대한민국 영역에서 생산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설비의 소재지(성명, 주소 포함)
- ② 생산자의 전화번호·모사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③ 기업의 경우, 그 소유자·관리자 및 회사 임원의 성명과 국적, 직위
- ④ 생산자가 고용한 피고용인의 수와 그들의 업무
- ⑤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생산능력
- ⑥ 섬유 또는 의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수 및 종류
- ⑦ 대략적인 주당 기계 가동 시간
- ⑧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원단·원사 또는 섬유원료를 공급하는 자의 신원
- ⑨ 미합중국 내 고객 각각의 성명 및 연락처

자료 : 한미 FTA 협정문 제4.3조 제2항

2.1.6 원산지 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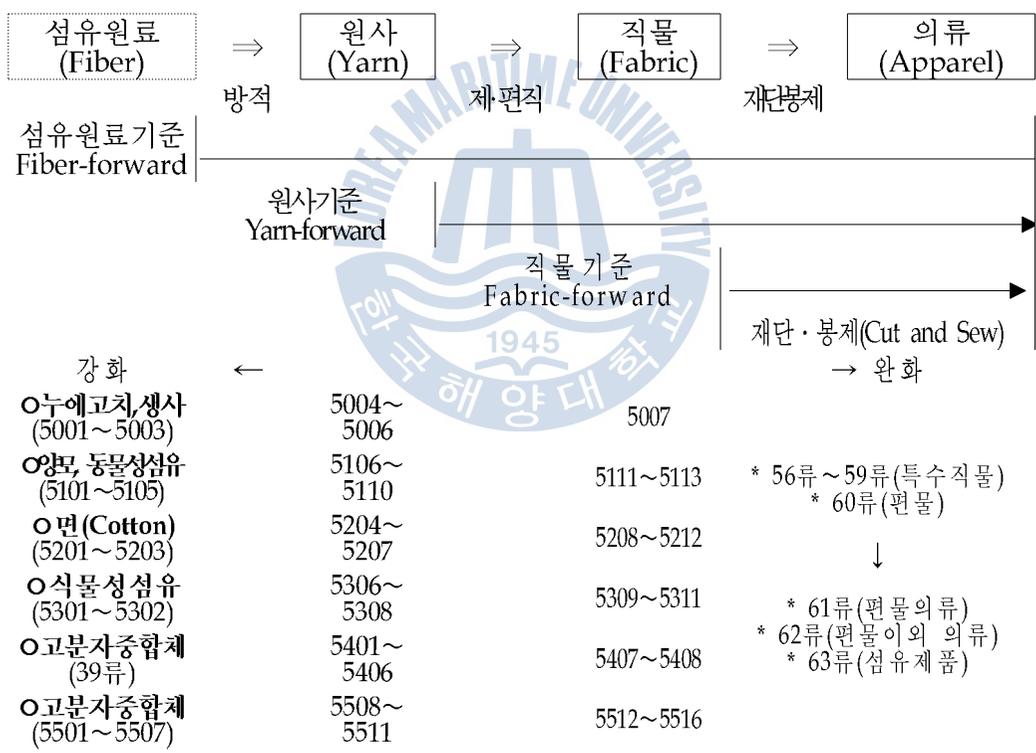
섬유 및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해석에 관하여는 협정 <부속서 4-가>에

서 두 가지 대원칙을 정의하고 있다.

(1)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생산결과로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이 부속서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품이 이 부속서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이 상품이 이 부속서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 5-10> 섬유·의류 제조공정별 원산지인정 방식



자료 : 관세청, 주요 산업별 한미 FTA 활용 매뉴얼

미국은 세계적인 섬유 수입국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섬유·의류산업 보호정책을 주요 통상정책의 근간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상품부문 협정에 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섬유·의류 분야에 대한 보호정책의 의지는 섬유·의류 분야는 협정문 내에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원산지규정 및 상세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호정책의 한 수단으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표 5-10>은 섬유·의류 제조공정별 원산지인정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은 NAFTA를 포함하여 자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역내산 원사(실, Yarn)를 사용하여야만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을 원산지 인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협정당사국의 역내산 ‘실’을 사용하여 섬유사와 직물을 제조하고 의류를 생산(재단 및 봉제)해야만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상과정에서 원사기준을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였다. 즉 린넨 직물, 합성 여성 재킷 및 합성 남성 셔츠 등 33개 품목에 대해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⁴⁰⁾ 이러한 예외허용으로 인해 대미 수출의 80% 이상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7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규칙

협정에서 정한 두 가지 대원칙 하에서 <부속서 4-가>에서는 섬유 및 의류의 범위 중에서 제11부, 제61류, 제62류, 제63류에 대해 규칙을 정의함으로써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는데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⁴¹⁾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대하여 <표 5-11>과 같이 세 가지 규칙을 정해두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협정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품목과 관련하여 원산지 규정을 완화해 주는

40) 1. 원사기준 미채택 직물·의류 제품 : 견직물(5007), 린넨직물(5311), 합성 여성재킷(6104), 합성 남성 셔츠 (6205), 2. 섬유 비역내산 원산 사용 : 견사(5006), 비스코스레이온사(5403) 등(출처 : 외교통상부)

41)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군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수출 이후에 검증에 대비하여 숙지하여야 할 품목들이다.

조건들로 역내 공급부족 원료에 대해 역외조달을 허용하면서 5년간 매년 1억 평방미터 상당만큼의 수입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

<표 5-11> 제11부에 대한 3가지 규칙

규칙	내 용
1	<p>수입당사국은 방직용 섬유제품(제51류, 제52류, 제54류,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은 다음으로부터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⁴²⁾되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p> <p>가. 부록 4-나-1의 목록⁴³⁾에 있는 하나 이상의 섬유원료 및 원사 나. 가호에 언급된 섬유원료 및 원사의, 그리고 이 부속서상 원산지 상품인 하나 이상의 섬유원료 및 원사의 혼합물(최소허용수준 7%, 원사에 들어있는 탄성사는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함)</p>
2	<p>수입당사국은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상품이,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단, 편직 또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된 봉제 또는 결합시(칼라 및 커프스 제외), 의류 걸감 원단이 다음과 같을 시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p> <p>가.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원단 나.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원사로부터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형성된 하나 이상의 원단 또는 편직된 구성요소 다. 가호에 언급된 원단, 나호에 언급된 원단 또는 편직된 구성요소 또는 이 부속서 상의 원산지 상품인 하나 이상의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의 혼합물(최소허용수준 7%, 원사에 들어있는 탄성사는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함)</p>
3	<p>수입당사국은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상품(류 규칙 1에 기술된 보이는 안감의 원산지 무관) 재료가 부록 4-나-1 목록에 포함되고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 충족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p>

자료 :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4-나

42) 원단 : 제직, 편직, 니들링(미봉), 터프팅, 펠팅, 인텐글링 또는 다른 그러한 과정과 같은 형성과정과, 표백, 염색 그리고 날염을 포함하는 마무리 작업을 말함.

원사 :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로부터 시작하여,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2.1.8 공급 부족 원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

협정 <부속서 4-나>에서 양국이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할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공급 부족한 원료에 대해 원사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수입당사국은 이해관계자⁴⁴⁾로부터 상업 용도 여부 판단을 요청받았을 때 30영업일 이내에 자국 영역 내에서 섬유원료·원사·원단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협정 <부록 4-나-1>의 자국의 목록에 추가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분류표 제11부에 대한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원산지 규정이 완화될 수 있다.

제11부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품목분류 제51류, 52류, 54류, 55류, 58류 또는 60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자격을 부여한다. 한미 FTA 발효 후 최초 5년간 매년 1억 SME⁴⁵⁾ 상당 물량까지 적용한다. 제11부 규칙 2 또는 3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품목분류 제61류 또는 제62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며 물량은 협정 발효 후 최초 5년간 매년 1억 SME 상당 물량까지 적용한다. 역외산 원료조달을 허용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을 완화한 측면이 있으며, 협정문에서는 “상업적인 물량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섬유원료·원사 및 직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수입당사국이 자국 목록에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을 추가하였을 경우,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고 결정한 경우 목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자국 결정 공표일로부터 6월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군이 섬유·의류임을

최종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함.

4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목록에는 현재 항목이 없으며, 부속서 4-나에 따라 자국의 목록에 변경을 행한 대체 목록을 공표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44) 이해관계자 : 당사국,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구매자, 또는 의류 상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공급자를 말함.

45) SME(Square Meter Equivalent) : 섬유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규정인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한 역외산 원료조달 허용 규정은 미국이 여타 FTA에서 부여한 관세특혜물량(TPL; Tariff Preference Levels)⁴⁶⁾과는 달리 FTA 체결할 때 구체적인 품목이 정해지지 않고, 특정 품목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때 신청을 받아 품목을 정하는 방식이다.

제3절 한-미 FTA와 섬유산업 변화

1.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동향

1.1 섬유원료 대미 수출동향

우리나라 섬유원료의 대미 수출동향을 보면, 54류(인조필라멘트 외)는 2011년도 1억8천3백만달러에서 2012년도 2억1천5백만달러로 17.5% 증가, 55류(인조스테이플 외)는 1억5천9백만달러에서 1억9천7백만달러로 23.7% 증가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이들 품목군은 한미 FTA 발효년도인 2012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한미 FTA 협정의 수혜 품목군으로 화학 섬유 원료로 분류된다.

동물성 및 식물성 등 천연 섬유원료로 분류되는 50류를 제외하고는 51~53류 제품군은 최소 2.3%에서 최대 2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류(양모, 기타 동물성)는 160만 달러에서 122만 달러로 24.3% 감소하였는데 전체 섬유원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60류(편물)는 소폭 감소하였다.

46) TPL(관세특혜물량) : 협정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 수량을 한정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나 한미FTA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표 5-12> 섬유원료 대미 수출동향

(단위 : 천불, %)

세번	2010	2011	2012
50류(견)	24,300	32,358	33,077(2.2)
51류(양모, 기타 동물성)	1,374	1,616	1,223(△24.3)
52류(면)	153,467	162,337	158,637(△2.3)
53류(마, 기타 식물성)	3,291	3,352	3,096(△7.7)
54류(인조필라멘트 외)	153,253	183,022	215,107(17.5)
55류(인조스테이플 외)	167,262	159,273	197,005(23.7)
60류(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	209,647	257,218	243,863(△5.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괄호안 값은 전년비 증가율)

<표 5-12>에서 보듯이 섬유원료 산업의 동향을 종합하면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화학섬유원료의 수출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5류, 54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도 천연 섬유원료의 전년 동월 대비 대미 수출동향을 보면, 50류(견) 평균 14.9%의 꾸준한 성장을 보였고, 51류(양모, 기타 동물성)는 1월에 급격히 감소한 후 한미 FTA 발효 초기인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은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였으나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52류(면), 53류(마, 기타 식물성)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발효 후 하반기로 갈수록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섬유재료 대미 수출동향

우리나라 섬유재료의 대미 수출동향을 <표 5-13>에서 보면, 56류(워딩, 펠트, 부직포)가 2011년 4천6백만달러에서 한미 FTA 발효연도인 2012년도에 5천9백만달러로 28%의 증가, 59류(침투·도포직물)은 2011년도 1억2천만달러에서 2012년 1억3천4백만달러로 12%의 증가를 보였다. 반면, 58류(특수직물,

레이스, 자수포)는 2.2% 소폭 증가에 그쳤고, 비중이 작은 57류(양탄자)는 0.4% 감소하였다. 한미 FTA의 수혜를 받은 품목은 56류, 59류 품목으로 나타났다.

<표 5-13> 섬유재료 대미 수출동향

(단위 : 천불, %)

세번	2010	2011	2012
56류(워딩, 펠트, 부직포)	33,403	46,409	59,408(28)
57류(양탄자)	4,373	5,758	5,736(△0.4)
58류(특수직물,레이스,자수포)	30,246	32,723	33,436(2.2)
59류(침투·도포직물)	95,635	120,409	134,971(12.1)

자료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괄호안 값은 전년비 증가율)

2012년도 섬유재료의 전년 동월대비 대미 수출동향을 보면 56류(워딩, 펠트, 부직포)는 월 평균 25%대 높은 성장을, 뒤를 이어 59류(침투·도포직물)가 17%대의 성장을 보였다. 58류(특수직물, 레이스, 자수포)는 2월에 11% 성장하였으나 이후 주춤하다가 6월부터 3%대의 회복을 보였다. 반면, 57류(양탄자)는 전년 대비 수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세가 회복되었다. 2012년도 섬유재료의 월별 수출 증가속도를 보면, 59류(침투·도포직물)가 2월에 300%의 급증으로 월 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57류(양탄자) 33.9%, 58류(특수직물, 레이스, 자수포) 31.4%, 56류(워딩, 펠트, 부직포) 30.1%로 나타났다.

1.3 의류 대미 수출동향

우리나라 의류 품목의 대미 수출 동향을 <표 5-14>에서 보면, 62류(의류와 그 부속품)는 2011년도 3천9십만 달러에서 2012년도 3천5십만 달러로 소폭

하락하였다. 수출비중이 높은 61류(편물제 이외의 의류)는 2011년도 2억3천8백만 달러에서 2012년도 2억1천3백만 달러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3류(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녕마, 중고의류)는 2011년도 2천2백만 달러에서 2012년도 2천9백만 달러로 약 28%의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표 5-14> 의류 대미 수출동향

(단위 : 천불, %)

세번	2010	2011	2012
61류(편물제 이외의 의류)	244,112	238,185	213,933(△10.2)
62류(의류와 그 부속품)	39,082	30,967	30,515(△1.5)
63류(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녕마, 중고의류)	22,772	22,785	29,337(28.8)

자료: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괄호안 값은 전년비 증가율)

2012년도 의류의 전년 동월대비 수출실적을 보면, 63류(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녕마, 중고의류)가 한미 FTA 발효 후 소폭 증가하다가 하반기부터 25%대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62류는 협정 발효 초기에 소폭 증가하였다가 9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61류는 발효 이후 2012년도 연말까지 10%대의 수출 감소를 보였다. 의류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한미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도 의류의 수출 증가 속도를 보면, 61류(편물제 이외의 의류)는 월평균 29.5%, 62류(의류와 그 부속품)는 월평균 30%, 63류(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녕마, 중고의류)는 32.9%의 증가율을 보여 63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품목 동향

한미 FTA 발효년도인 2012년도에 HS 2단위별로 전년대비 수출 증가 품목

을 섬유원료, 섬유재료, 의류군으로 구분하여 종합해 보면, 섬유원료는 50류(견) 2.2%, 54류(인조필라멘트 외) 17.5%, 55류(인조스테이플 외) 23.7%으로 나타났으며, 섬유재료는 56류(워딩, 펠트, 부직포) 28%, 58류(특수직물, 레이스, 자수포) 2.2%, 59류(침투, 도포직물) 12.1%이고, 의류는 63류(방직용 섬유 의 기타제품, 세트, 냅마, 중고의류) 28.8% 증가했다.

HS 4단위별 섬유원료 전년대비 수출 증가 품목을 <표 5-15>에서 증가율 순으로 보면 5508호는 1,653%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20만 달러로 낮은 편이며, 5510호는 164% 증가하면서 수출액 818만 달러로 큰 폭 증가를 보였다. 대미 수출액 1억달러 이상 품목 중에서 증가 품목은 5402호 28.8%, 5503호 25.43%, 5407호 8.6%, 6001호 2.2%, 5208호 1.6% 순으로 나타났다. 섬유원료 263개(HS 8단위 기준) 중에서 관세 철폐 품목은 160개 품목으로 60%로 비중이 작은 편이다.

섬유재료 전년대비 증가품목은 증가율 순으로 5602호 4,220%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274만 달러 상당액이다. 이어서 5803호 223%(35만 달러), 5601호 217%(132만 달러), 5911호 191%(899만 달러) 순으로 증가하였다. 대미 수출액 비중이 낮은 품목군 임에도 대미 수출액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증가 품목으로 5603호 32.5%, 5903호 19%, 5806호 13.1% 증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섬유 원료 103개(HS 8단위 기준) 중에서 관세 철폐 품목은 90개 품목으로 87%를 차지한다.

의류 전년대비 증가품목은 증가율 순으로 6101호 1,50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10만 달러 미만으로 매우 적은 비중이다. 이어서 급증한 품목으로는 6309호 513% 6102호 395%, 6103호 263%, 6201호 163%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1백만 달러 미만으로 수출 비중이 낮았다. 의류의 경우 대부분의 제조가 중국, 동남아등 저임금 국가에서 수행되고 우리나라 역시 이들 국가들로부터 많은 의류 품목을 수입하고 있음에 따라 수출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액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수출 증가 품목은 6307호 72%, 6104호 28%, 6116호 6.9%, 6110호 3% 증가 순

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미국 측 양허표의 의류는 380개(HS 8단 위 기준)이며 이 중에서 즉시철폐 품목은 371개로 97%를 차지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미 FTA이후 섬유재료 부문과 의류부문은 수출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섬유원료부문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첨단기술개발에 의해 섬유원료부문에 비교우위가 있고 한국은 섬유재료 부문과 의류부문에 비교우위가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15> 섬유원료 수출 증가 품목 현황(HS4 단위 기준)

HS 4단위	전년비 증가율	수출액 (천달러)	양허유형 (HS 8단위 수)
5007(견직물(견웨이스트 포함))	2.2	33,075	A(3), K(1)
5206(면사(면함유량 85/100 미만,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	40.2	428	A(9) D(11)
5208(면직물(면함유량 85/100 이상, 1제곱미터당 200그램 이하))	1.6	130,526	A(24),K(2), D(35)
5209(면직물(면함유량 85/100 이상, 1제곱미터당 200그램 초과))	1.7	4,178	A(8), D(11)
5402(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소매용의 것 제외, 67데시텍스미만 포함))	28.8	100,182	A(13),K(1) G(11)
5403(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소매용의 것 제외, 67데시텍스미만 포함))	3.7	403	A(11)
5407(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 직조직물 포함))	8.6	102,552	A(14), K(6) D(8), G(20)
5408(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 직조직물 포함))	26.3	9,611	A(22), K(4)
5503(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 방적준비 처리한 것 제외))	25.4	179,607	A(5), K(2)
5508(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	1,653.5	209	A(1), D(1)
5510(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재봉사·소매용 제외))	163.9	8,185	A(7)
5512(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함유량 85/100 이상))	26.8	252	A(6)
6001(파일편물(롱·테리 포함, 메리야스·뜨개질의 것에 한함))	2.2	13,598	A(8) D(1)
6002(메리야스·뜨개질 편물(폭 30cm 이하, 탄성사·고무사의 함유중량이 5/100 이상, 6001호 제외))	193.9	195	A(3) G(1)
6005(경편직 직물류(거분편직기로 제조한 것, 6001~6004호 제외))	3.9	61,344	A(10) D(1), G(3)

자료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수출 통계

<표 5-16> 섬유재료 수출 증가 품목 현황(HS4 단위 기준)

HS 4단위	전년비 증가율	수출액 (천달러)	양허유형 (HS 8단위 수)
5601(방직용 섬유의 워딩·그 제품)	217.8	1,329	A(5), K(1)
5602(펠트[침투·도포·피복·적층 불문])	4,220.8	2,745	A(6), K(1)
5603(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 불문])	32.5	40,368	K(11)
5604(고무사 및 고무코드, 방직용 섬유사, 5404,5405호 스트립 유사물품)	185.4	2,134	A(3)
5605(금속드리사(짐프 여부 불문))	107	1,817	A(2)
5705(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18.5	2,464	A(1), K(1)
5801(과일직물·셔닐직물(5802,5806호 해당 직물 제외))	23.7	4,757	A(6), K(1)
5803(거즈(5806호 해당 세폭직물 제외))	223.1	351	A(2), K(3)
5806(세폭직물(5807호 제외),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짐)	13.1	16,197	A(6), K(1) D(4), G(1)
5807(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유사물품(원단상, 스트립, 절단형에 한함))	11	2,087	A(6)
5809(금속사의 직물과 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의 직물(의류, 실내용품, 유사물품 사용에 한함))	45.8	226	A(1)
5901(서적장정용 또는 유사용도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47.9	1,044	A(4)
5903(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19	66,340	A(8), K(6) D(3), G(1)
5905(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제)	51.3	478	K(2)
5907(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 배경막)	7.2	828	A(2), K(4)
5910(전동용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섬유제에 한함))	141.2	86	A(2)
5911(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류주 7호 공업용에 한함))	191.4	8,994	A(7), K(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수출 통계(재구성)

<표 5-17> 의류 수출 증가 품목 현황(HS4 단위 기준)

HS 4단위	전년비 증가율	수출액 (천달러)	양허유형 (HS 8단위 수)
6101(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유사 의류(편물한함))	1,503	95	A(7)
6102(여자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유사의류(편물한함))	395.6	773	A(7)
6103(남자 또는 소년용 슈트·양상블·재킷·블레이저·긴바지·멜빵바지 및 승마용바지, 반바지(수영복제외))	263.9	321	A(29), K(2)
6104(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양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멜빵바지 및 승마용바지, 반바지(수영복제외))	28	15,050	A(41), K(3)
6110(저지·폴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유사의류(편물한함))	3	23,261	A(11), G(1)
6112(의류(5903, 5906, 5907해당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39.8	244	A(11)
6114(기타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에 한함))	39.1	1,227	A(41) D(1), G(1)
6116(장갑류)	6.9	48,664	A(24), K(5)
6201(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유사의류)	163.7	380	A(18), K(2)
6203(남자 또는 소년용 슈트·양상블·재킷·블레이저·긴바지·멜빵바지 및 승마용바지, 반바지(수영복제외))	11.3	952	A(40), K(3) D(3), G(1)
6205(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30	5,367	A(8), D(2)
6208(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기타조끼·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가운·드레싱가운 및 유사의류)	25.5	389	A(15)
6209(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22.3	122	A(12), K(1)
6210(의류(5602,5603,5903,5906,5907호 직물류 제품에 한함))	37.6	1,481	A(19), K(1)
6212(브래지어·거들·코르셋·브레이스·서스팬더·가터 및 유사 제품)	89.5	504	A(5) G(2)
6214(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 물품)	1.8	7,598	A(6)
6301(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30.7	2,282	A(4), K(1)
6302(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8.6	5,370	A(30), K(2)
6303(커튼(드레이프를 포함)·실내용블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21.5	299	A(6), K(1)
6307(기타 제품(드레스패턴 포함))	72	16,046	A(9), K(4)
6309(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제품)	513.8	235	K(1)

자료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수출 통계(재구성)

제6장 결 론

섬유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선진국은 고용효과 측면에서, 개도국은 저자본으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시 되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체제가 성립되어 자유무역기조가 국제경제 질서로 정착되었지만 섬유산업은 선진국의 보호정책으로 다른 산업보다 훨씬 긴 자유화과정을 겪게 되었다.

1960년대에 개도국들이 값싼 임금을 바탕으로 한 섬유제품에서 가격경쟁력을 얻게 되자 선진국들은 단기면직물협정과 장기면직물협정을 통해서 수입제한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선진국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신보호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면직물 외의 개도국에서 생산된 기타 섬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규제대상품목의 범위가 확대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973년 40여개 섬유수출입국이 참여한 MFA가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으로부터 섬유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물량, 연간 수출쿼터증가율, 수출품목 등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MFA가 수차례 연장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수량규제를 줄이는 것보다 각종 예외조항 신설, 개도국에 유리한 쿼터 폐지, 자의적 품목분류 등의 행위를 통해서 개도국의 섬유수출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MFA가 연장될 때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수입쿼터 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섬유무역의 자유화문제가 공식 협상의제로 채택되었고 WTO의 다자주의 틀 안에서 섬유협정이 타결되었다. 이 협상 타결로 WTO섬유협정은 10년의 유예기간(1995-2004)를 걸쳐 섬유쿼터제도를 폐지하고 2005년 섬유무역을 WTO/GATT로 복귀시켜 자유화를 실현하였다. 이후 중국,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이 미국시장에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

율을 높여가자 다른 형태의 보호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즉 지역주의 틀에서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FTA체결이다. 한미FTA에서 보듯이 아직도 선진국들은 원산지규정 등을 근거로 수입제한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섬유무역이 실질적으로 자유화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 섬유산업은 선진국에게는 섬유부분의 기술에 뒤지고 개도국에게는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짐으로써 비교우위를 잃어가고 있다. 한미FTA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미국시장에서 FTA는 개도국의 가격경쟁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섬유사, 면직, 의류 등 각 부분의 기술혁신, 새로운 디자인과 수직적 계열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마련할 때이다.



참고문헌

- 강인수, 한미FTA에 관한 소고, 『경제경영논집』 36집 2호, 숙명여대, 2006, p19-40
- 권상장·임홍식, WTO섬유협정 이행평가와 향후 대처방안, 『사회과학논총』, 20권 2호, 2001, pp57-90
- 고중현·김주남, 한미 FTA에 대비한 미국 섬유시장 진출전략, 『통상정보연구』 제11권 1호, 2009, pp95-116
- 김미아, MFA 폐지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유럽연구』 제27권 1호, 2009, pp143-165
- 김정수·한진규, 『섬유류교역자유화-MFA개편논의와 우리의 대응』, 산업연구원, 1990
- 김준형(외), 『2000년대 섬유산업의 중흥을 위한 정책방안』, 산업연구원, 1994
- 류건우·김승민, WTO섬유협정과 EU의 섬유교역 자유화정책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제12호 pp25-50
- 문대영·김기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과 우리의 대응』, KIET, 1985. 3
- 박형래·박영기, 『국제무역환경론』, 두남, 2004
- 노봉성, 다품목섬유협정(MFA)의 경제적 효과와 우리의 대응, 『한국개발연구』, KDI, 1985.
- 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산업 FTA의 이해와 활용 자료집』, 2012
- 신현종·노택환, 다자간섬유협정(MFA)의 역사적 의의와 경제적 영향, 『사회과학연구』 12권 2호, 영남대학교, 1992, pp419-446
- 이건우, GATT체제와 비교한 MFA의 문제점과 전망, 『세계경제동향』 KIET 1991. 8
- 이은섭, 미국의 섬유제품수입규제 규범, 『무역학회지』, 제25권 3호, 1998,

pp1-34

전창환, 한미FTA 협상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동향과 전망』 67, 한국사회
과학연구소, pp157-183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공업편람』 1991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연감』 1991

Chang, Eun Young, The Effect of Korea-US FTA on the Entry Strategy
of Us Textiles and Clothing Firms for Korean Mark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18 no. 1, 2012,
pp371-383

GATT, *International Trade*, 1991.

GATT,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1984

